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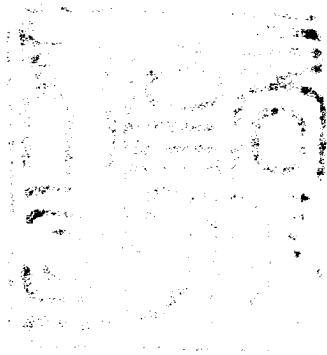
남북관계 주요법령집

2002

월간판



통 일 부



目 次

第1編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7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12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23
4.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 관한法律	45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52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64
7. 南北協力基金法	89
8.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92
9.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96
10.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97
11. 統一教育支援法	122
1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124

第2編

13. 남북공동성명('72. 7. 4)	129
1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31
1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 관련 부속합의서	133
1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136
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139
18.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44

19. 남북공동선언(2000. 6. 15)	145
20.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46
21.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150
22.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59
2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61
24. 제네바 미·북 핵 기본 합의문	165
2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167
2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172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83

第3編

28. 大韓民國憲法	201
29. 國會法	217
3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49
3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53
3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57
33. 국가보안법	263

<부록>

34.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71
35. 북한 당규약(조선로동당 규약)	286

가나다順 索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57
○ 국가보안법	263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49
○ 國會法	217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53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83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 관련 부속합의서	133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136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139
○ 남북공동선언(2000. 6. 15)	145
○ 남북공동성명('72. 7. 4)	129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3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2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61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150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59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46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31
○ 南北協力基金法	89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96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92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97
○ 大韓民國憲法	201
○ 북한 당규약(조선로동당 규약)	286
○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71
○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45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64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2
○ 제네바 미·북 핵 기본 합의문	165
○ 統一教育支援法	122
○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124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167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172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44

第 1 編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7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3
4.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 관한法律	45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52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64
7. 南北協力基金法	89
8.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92
9.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96
10.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97
11. 統一教育支援法	122
1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124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制定 1990·8·1 法律 第4239호
 改正 1997·12·13 法律第5454號 (政府名稱등의 변경에
 따른 建國法律의 장비에 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 등을 原因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經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행하는 文化·體育·學術·經濟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を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正當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爲하여 統一部に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0·12·27>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0·12·27>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統一部所屬 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改正 90·12·27>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의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력과 관련된 重要 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 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協議會의 會議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部長官이 發給한 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海外同胞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

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을 하는 자(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4·12·31, 96·12·30>

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12·27>

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部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12·27, 96·12·30>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승인을 要하는 品目 또는 禁止品

目的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品目에 관한 제
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部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統一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第16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部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

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統一部長官은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 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 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統一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 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2·12·8>

第22條(通信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は 檢疫調

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 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を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5條(協調要請) 統一部長官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政策 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 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 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

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③南韓과 北韓間的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改正 97·12·13>

1. 外國換管理法
2. 外國人投資促進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租稅減免規制法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北韓을 往來한 在外國民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第29條(刑의 減輕등) 第27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의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附 則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제13071호
개정 2001· 10· 31 대통령령제1739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의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횡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가 발급 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 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 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무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2(접촉승인유효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

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 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1(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의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삭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외의 변경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

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

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

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업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정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5조(운행정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정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

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기본법
3. 국제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 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 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통일부령 제13호, 2002.3.4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북한방문신고)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에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

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2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7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

식에 의한다.

제9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 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생 략>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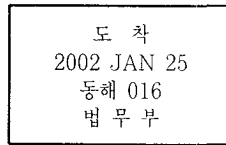
심사확인인(제10조제2항 관련)

(예 시)



(규격 30mm×20mm)

(예 시)



(규격 30mm×20mm)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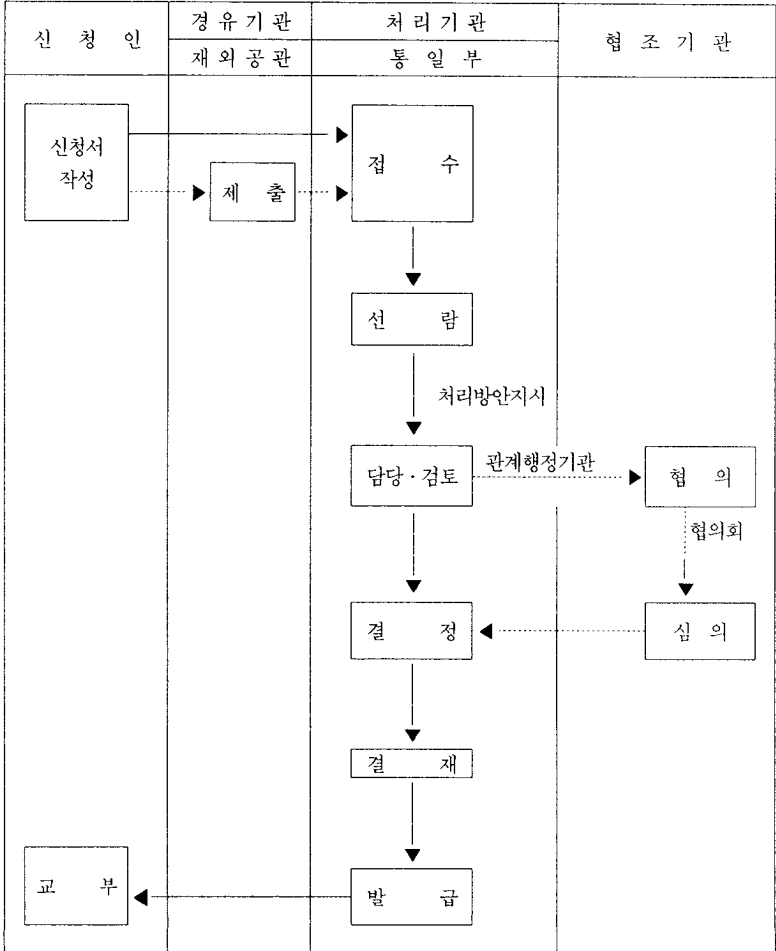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인사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 동반 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진 2.5cm×3cm		사진 2.5cm×3cm				
				cm							
				cm							
③방문 대상자 인사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④방문목적											
⑤방문경위(초청장방문알선 및 중개인포함)											
⑥방문지역 및 일정											
⑦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⑧방문계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⑨방문경험(과거 3년 이내)											
⑩방문사유(수시방문신청의 경우에만 함)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뒷 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포함)
 3.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합니다.)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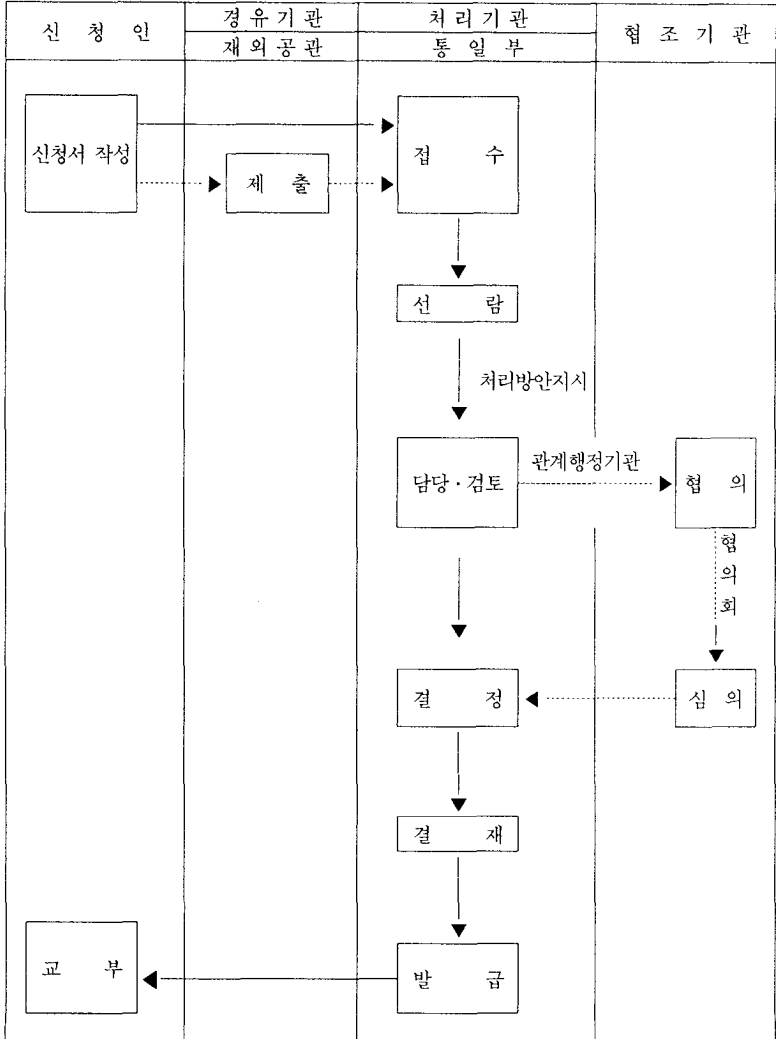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사진 3.5cm×4.5cm							
② 동반 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진 2.5cm×3cm	사진 2.5cm×3 cm
					cm		
					cm		
③방문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관계	거주지		
④방문목적							
⑤방문장소(초청장, 문화관광, 방문알선 및 중개인포함) 결론 위선							
⑥방문지역 및 일정							
⑦방문예정경로							
⑧방문경험(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남한지역의 법질서와 안내에 따를 것이며,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뒷 면</p> <p style="text-align: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right;">신청인: (인)</p>							
동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수시북한방문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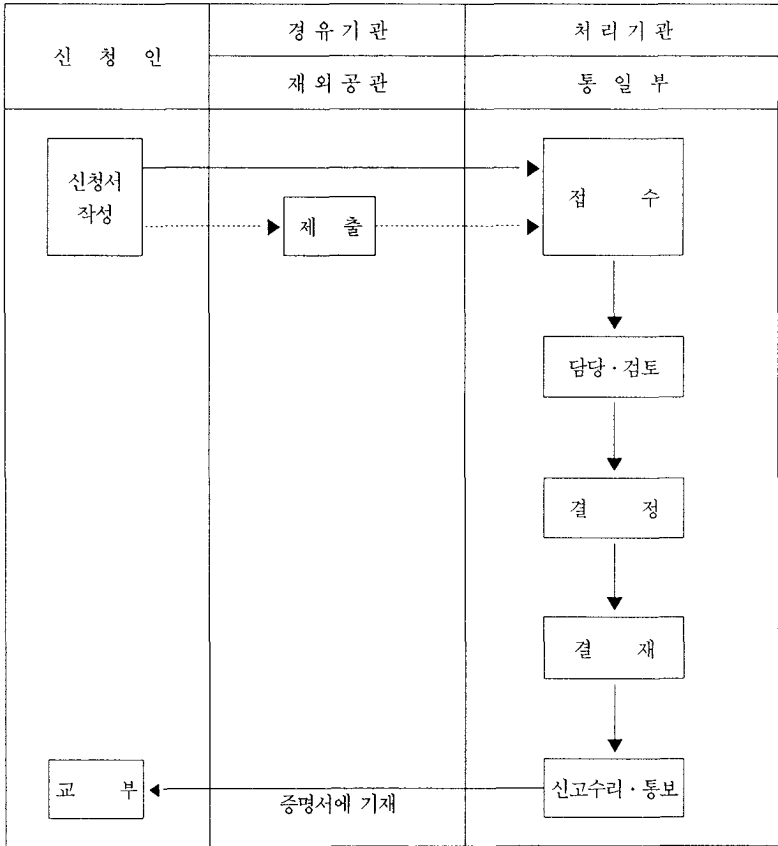
처리기간	7일
------	----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① 신 청 자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직 장			전 화 번 호		
②방 부 증 명 서 발 급 번 호						
③방 문 경 위 (입북비자획득 등)						
④방 문 목 적 유 (사 유)						
⑤방 문 기 간 정 (일 정)						
⑥방 문 경 로 (경 유 지 포 함)						
⑦여 행 지 내 연 고 자 또 는 접 촉 인 물		성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관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방문을 신고하며, 이 신고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부리 및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1부 또는 초청장 원본 1부</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 (또는 서명)</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①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처리기간 5일
	구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			
	방문지				
사진					3.5cm×4.5cm

②재발급 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뒷 면

년 월 일
신청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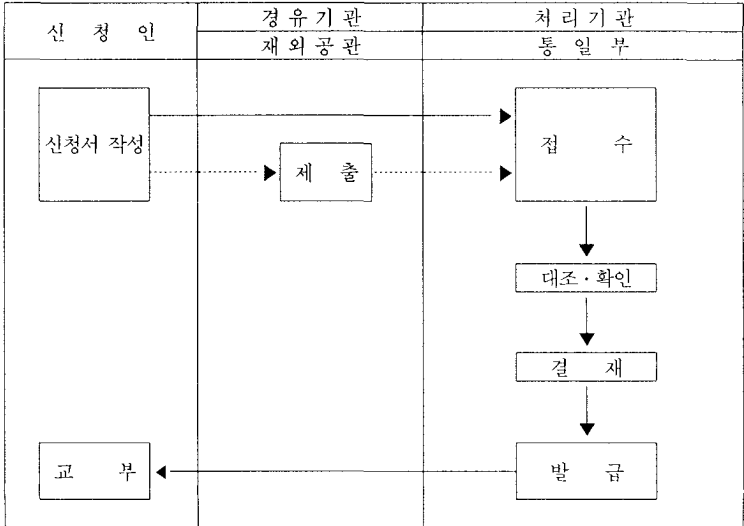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인쇄용지(복급) 80g/m²)

(뒷 면)

- 첨부서류: 1.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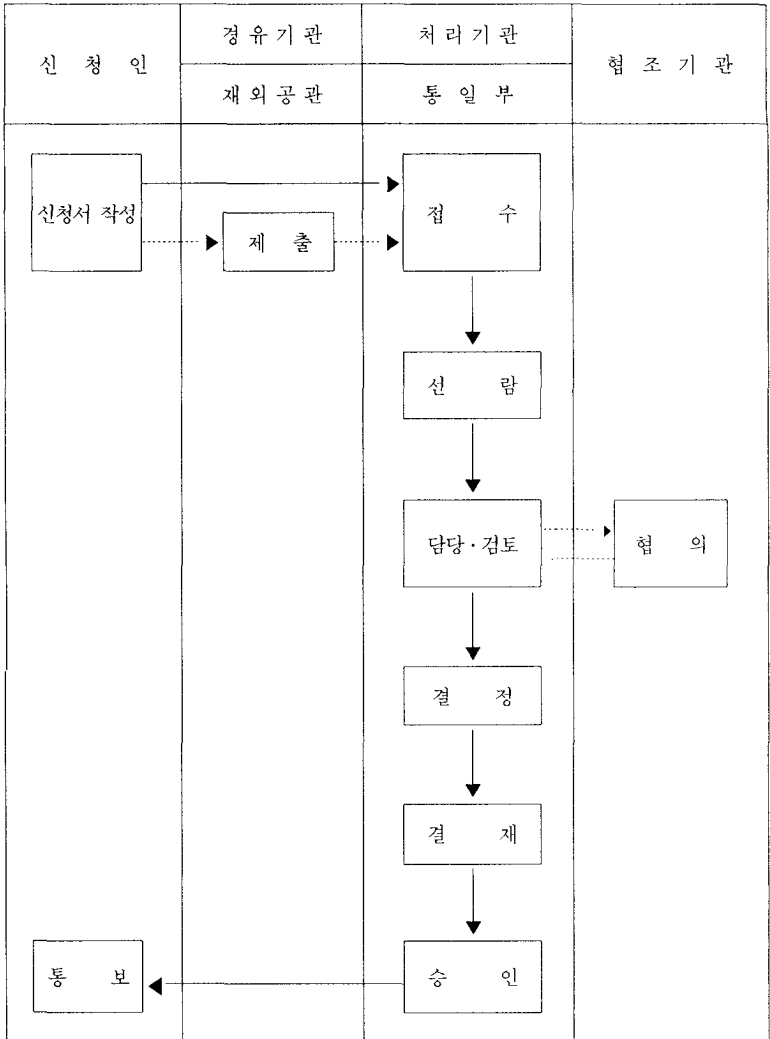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성 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방 문 목 적			
②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년 월 일 [일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일 (개월)]	
③연 장 사 유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유효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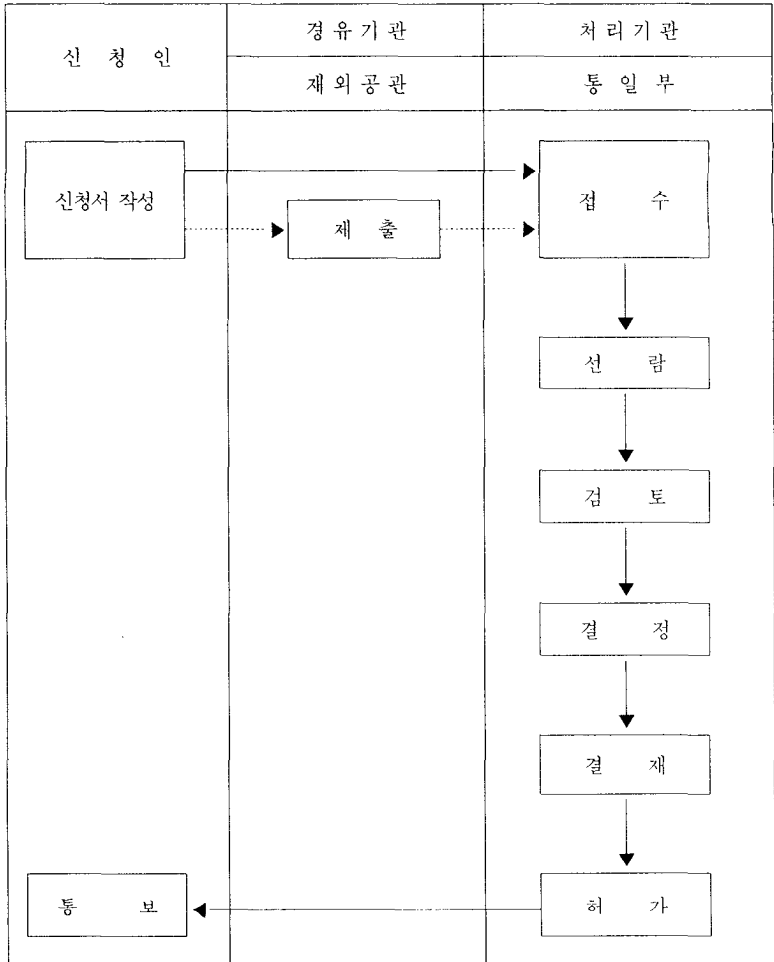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①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연락처	(전 화:)				
	직 업	(전 화:)				
②방문시 접촉인사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 접 촉 목 적						
④ 접 촉 경 위						
⑤ 접 촉 일 시 및 장 소						
⑥ 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년	월	일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직장명	
거주지 주소·전화번호			
방문지 주소·전화번호			
방문목적		출발지(담승편명) ()	
방문에정기간		서 명	
공용란		심사인	

80mm × 118mm
인쇄용지(OCR급) 105g/m²

[별지 제12호서식]

교역 보고서

보 고 자	① 상 호		② 무역업고유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고사유

보 고 개 요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첨부서류 : 물품의 반·출입실적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制定 1997·1·13 법률 제5259호
 改正 1999·12·28 法律第6056號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
 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
 會·文化등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
 서 신속히 適應·定着하는데 필요
 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
 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
 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
 場등을 두고 있는 者로서 北韓
 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
 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
 離脫住民을 말한다.
3. "定着支援施設"이라 함은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말한다.
4. "保護金品"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
 거나 貸與하는 金錢 또는 物品
 을 말한다.

第3條(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
 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
 시한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 적용
 한다.

第4條(基本原則) ①大韓民國은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人道主義에 입각

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
 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
 고 文化적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年
 齡·世帶構成·學力·經歷·自活
 能力·건강상태 및 財産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
 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單位로 행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世帶를 單位로 행할 수 있
 다. <改正 99·12·28>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
 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年으로 하
 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2年
 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
 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
 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12·
 28>

第6條(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①
 北韓離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
 議·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 "協
 議會"라 한다)를 둔다.

1.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
 한 보호 및 定着支援 기간의 단
 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보호여부의 決定에 관한 사항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措置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協議會는 委員長 1人を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統一部次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④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保護申請등) ①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臨時保護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8條(保護決定등) ①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한 統一部長官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相關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在外公館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이를 保護申請者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第9條(保護決定의 기준)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3. 偽裝脫出 嫌疑者
4. 滯留國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10條(定着支援施設의 設置)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한다. 다만,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情報院長이 보호하기로 決定한 者를 위하여서는 國家情報院長이 별도의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定着支援施設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定着支援施設에의 보호등)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地로 轉出할 때까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金品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身元 및 北韓離脫動機의 確認, 健康診斷 기타 定着支援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2條(登錄臺帳)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本籍·家族關係·經歷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登錄臺帳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統一部長官은 모든 登錄臺帳을 統合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國家情報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登錄臺帳의 기재사항을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3條(學力認定) 보호대상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履修한 學校教育의 課程에 상응하는 學力을 인정받을 수 있다.

第14條(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第15條(社會適應教育)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에 定着하는데 필요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16條(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第17條(就業保護등)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이 경우 就業保護 실시기간은 실제 就業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の 2分の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③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냈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第17條의2(就業保護의 제한)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就業保護를 제한할 수 있다.

1. 統一部長官이 就業을 알선한 事業場에 正當한 사유없이 就業하지 아니한 경우
2. 就業한 후 正當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退職한 경우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

第17條의3(營農定着支援)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農을 희망하는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營農教育訓練 또는 農業現場實習 등 營農定着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8條(特別任用) ①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職位·擔當職務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②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階級·職責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軍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任用に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就籍의 特例)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로서 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에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의사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울家庭法院에 就籍許可

申請書를 제출한다.

②第1項의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登錄臺帳謄本과 戶籍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身分表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家庭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籍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與否를 決定하고, 就籍許可를 한 때에는 당해 就籍地의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邑·面의 長에게 就籍許可書謄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市·區·邑·面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籍許可書謄本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戶籍을 編製하여야 하고, 住所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就籍된 戶籍謄本을 첨부하여 戶籍申告事項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20條(住居支援등)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住民登錄轉入申告日부터 2年間 統一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住居支援에 따라 취득하게 된 所有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이하 "所有權등"이라 한다)을 讓渡하거나 抵當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등의 登記申請은 보호대상자를 代理하여 統一部長官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所有權등은 讓渡나 抵當權의 設定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登記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1條(定着金등의 지급)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定着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②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 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金 및 報勞金の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居住地保護)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定着하여 스스로 生活하는데 따른 隘路事項의 解消 기타 自立·定着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業務를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 보호대상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長"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23條(報告義務) 地方自治團體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定着實態등을 파악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24條(教育支援)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年齡·修學能力 기타 教育與件등을 고려하여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5條(醫療保護) 보호대상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醫療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保護를 행

할 수 있다.

第26條(生活保護)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者로서 生活이 어려운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年の 범위내에서 同法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第26條의2(國民年金에 대한 特例)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決定 당시 50歲 이상 60歲 미만인 保護對象者는 國民年金法 第5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부터 國民年金을 支給 받을 수 있다.

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10年 미만 되는 者 : 60歲가 되는 날

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되는 者 :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の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 미만의 매 1月은 12分の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の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加算한다.

③ 保護對象者의 國民年金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 國民年金法에 의한다.

第26條의3(生業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公共施設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許可 또는 委託하는 경우,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大統

領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27條(보호의 변경)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年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경우
2. 故意로 國家利益에 반하는 허위의 情報를 제공한 경우
3. 死亡 또는 失蹤宣告를 받은 경우
4. 北韓으로 되돌아가려고 企圖한 경우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종료 또는 第5條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종료하거나 第5條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28條(申告義務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居住地 轉入日부터 5年間 住所·職業 또는 勤務地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관할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申

告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申告書의 寫本을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9條(費用的 부담) ①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2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업무의 費用을 매년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며, 그 過不足額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還收하여야 한다.

第30條(北韓離脫住民後援會)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北韓離脫住民後援會(이하 "後援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1. 北韓離脫住民의 生活安定 및 社會適應 지원사업
2. 北韓離脫住民의 就業 지원사업
3. 기타 統一部長官이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後援會에 委託하는 事業

② 統一部長官은 後援會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後援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 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1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이나 관련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32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檢討하여 처분이 違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33條(罰則) ①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이 法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 또는 資料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業務외의 目的에 이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財物이나 財産상의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한다.

④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부 칙 < 생략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7·7·14 대통령령 제15436호)
개정 2002·6·3 대통령령제1762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별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간의 보호결정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8, 개정 2002·6·3>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

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3·31>

제4조(소위원회) ①회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99·12·31>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

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제12조(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및 기간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거나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처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로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 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98·12·31>

제24조(협조요청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 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영농정착지원) <조 이양 제 35조의3, 2000·1·28>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2·6·3>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8·12·31>

제33조(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 급여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③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제34조의3(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00·1·28>

- 1.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보

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제35조(취업알선)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6·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 2002·6·3>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1·28>

-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②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

월을 말한다. <신설 2000·1·28>

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00·1·28>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 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④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 필요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지역 : 특별시지역
2. "나"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98·12·31, 단서 신설 2002·6·3>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2·6·3>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

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후단 신설, 2002·6·3〉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지원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미만의 자
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지원한다.

②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98·12·31>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1>

제47조의2(생업지원) 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익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1. 장애인
2. 모자(母子)가정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2000·1·28, 개정 2002·6·3>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 접수 및 취업알선

제50조(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생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4·13 통일부령 제7호
개정 2002·4·8 통일부령제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5>
②<삭제 2000·2·15>

제3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2·15>

제3조의3(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5>

제3조의4(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4조(거주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 거주지에 진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5>

③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4분의 1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개정 2002·4·8>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라 함은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

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5>

부 칙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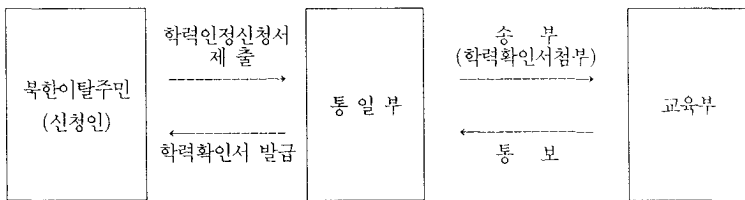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input type="checkbox"/> 자격인정				처리기간	
	신청서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이수학력	기 간	이수학교명		전 공	졸업여부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종목		등 급	보수교육	
					<input type="checkbox"/> 필 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자격관련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지		직 책	비 고	
<p>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항·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통일부장관 귀하</p>						
※ 구비서류 1. 학력·자격인정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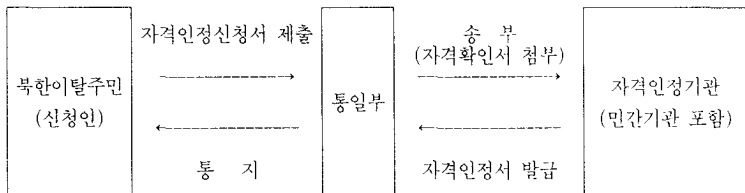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 자격인정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자격 확인서				
신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인	주 소			전화번호
	학 교 명		학 년	전 공
학 력 확 인 사 항				
자 격 확 인 사 항	자격종류	취득일	근무지	근무기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3항·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인의 학력· 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 구비서류 1. 학력·자격인정신청서 사본 1부 2. 학력·자격인정 관련자료(필요시)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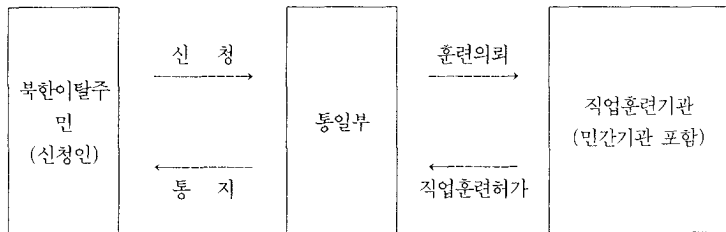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직업 훈련 <input type="checkbox"/>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사회적응교육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미수료		최종학력		학교(졸업·중퇴)
	건강상태				생활근거지	
주 요 학 력 · 경 력	기 간		내 용			
훈 련 희 망 사 항	기 간		훈련직종		훈련기간(주간·야간)	
정 착 희 망 지 역 (영농 정착신 청서)	제 1 희망		제 2 희망		기 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1항·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 실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고용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사업주	회사명				종업원 총수		
	주소				주요 생산품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예금계좌번호
취업 보호 대상자	성명				취업일(재취업일)		
	주민 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기술·기능자격		
취업 보호 대상자 임금 지급 내역	근무 부서				기능수준	상 중 하	
	근무 기간				숙련노동자 월평균임금총액		
	임금총액(기본금)						
	고용지원금신청 (임금의 1/2)					기 고용지원금 총수령액	
특기 사항							
<p>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년 월 일</p> <p>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1.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상 사본 1부						없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지급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적 사항	회 사 명		근 로 자 수 총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요 생 산 품	
	북한이탈 주민고용수		고용비율 (북한이탈주민고용수 /근로자총수)	
	주 소		전화번호 (FAX)	
우선구매지원 신청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 조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ní)

[별지 제4호의3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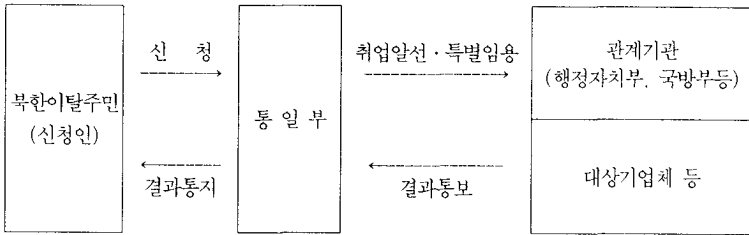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취업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특별임용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기간	학교	직업 관련	기간	훈련직종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담당직무	직위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능력	
								상중하
								상중하
취업희망조건	순위	취업처	직종	임금	근무지			
	1							
	2							
특기사항								
<p>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특별임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구비서류 1. 자격인정서 사본 1부(해당자) 2.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주택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임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자택)
가족사항	성명	관계	성명	관계
희망주택사항	주택형	면적(평형)	희망지역	
	아파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5항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양·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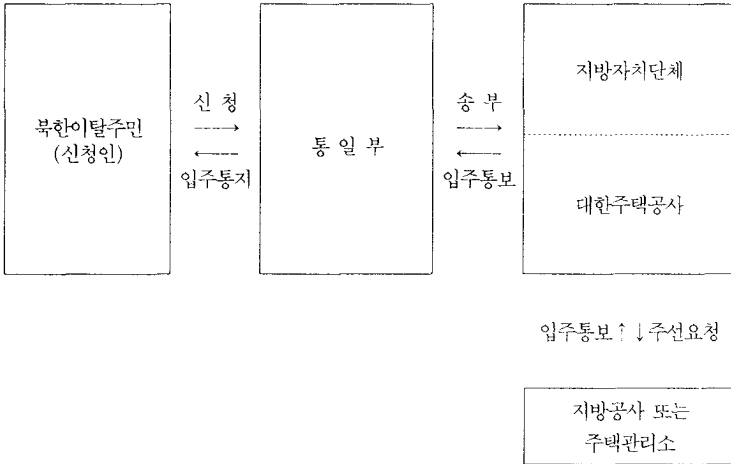
1.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뒷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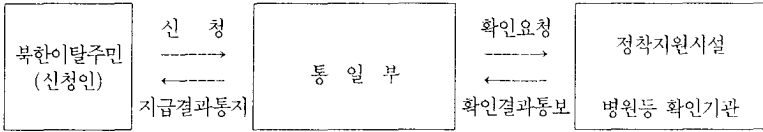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가산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성 명	관 계			
가산금지급사유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내역					
<p>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년 월 일</p> <p>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 일 부 장 관 귀하</p>							
※ 구비서류 1.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50px;"> <tr><td style="padding: 2px;">수수료</td></tr> <tr><td style="padding: 2px;">없 음</td></tr> </table>	수수료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 ²)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거주지 보호 대 장

보 호 대상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새 대 구 성 원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령	직업(근무처)	월소득	건강 상태	
주소 변경 사항	주 소				연락처	거주지 전입일		
생 활 실 태	거주형태		가계 월평균소득		자 산	생활정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중·하		
사 회 연 계 · 지 원 사 항	연월일	단체(개인)명			연계·지원방법	현 금	현 물	
신상· 생활 변동								
조 사 자	조 사 일		소 속		직 급	성 명	확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8서식]

거주지등 변경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주 소	기존		
		신규		
	직업·근무지	기존		
		신규		
	기 타 ()	기존		
		신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동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상변동시 증명서류 1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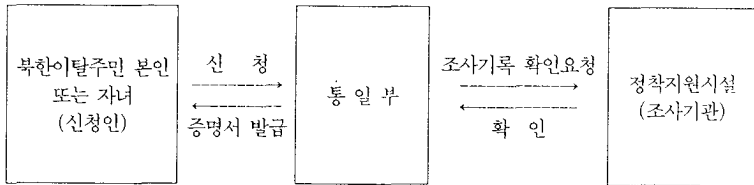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교육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보호대상자	성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전화번호			
취학자	성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학교명	학과	학년	주민등록번호
<p>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보호대상자와의 관계 :</p> <p>통 일 부 장 관 귀 하</p>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계 호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호대상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보호결정일)	
교육보호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위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별지 제11호서식]

접수번호	교육지원보조금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90일
학 교 명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취학자	등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소요경비 총액	교부받고자하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	₩	₩
보 조 금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총(학)장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보호대상자 성적통지서·입학통지서 등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집수번호		생활보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주택)
가족사항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근무처·직위)		(월소득)		
재산	(동산)		(부동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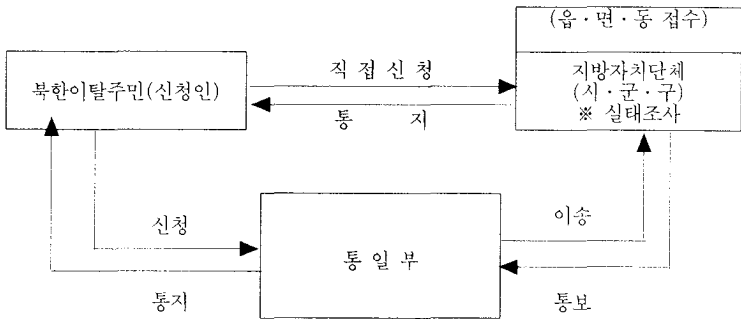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생활보호 신청 〉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생업지원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적 사항	성 명		입 국 일	
	주민등록 번호		허가신청장소	
	주 소		전화번호(FAX)	
	기 타			
편의 시설 신청 내역	관 련 부 처 (담당과명시)		전화번호 (FAX)	
	장 소			
	신 청 요 건	0 0 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 신청서				없음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南北協力基金法

제정 1990 · 8 · 1 法律第4240號
 改正 1999 · 12 · 31 法律第6075號(兩儀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 交流와 協力을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 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 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 · 12 · 31>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改正 99 · 12 · 31>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 統一部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

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 · 12 · 27, 96 · 12 · 12>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 · 12 · 27, 97 · 12 · 13>

第6條 削除 <93 · 12 · 31>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統一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0 · 12 · 27, 99 · 5 · 24>

②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 · 12 · 27>

③ 統一部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 · 12 · 27, 97 · 12 · 13, 99 · 5 · 24>

④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0 · 12 · 27>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改正 93 · 12 · 31>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등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력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 <改正 99·12·31>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 統一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改正 90·12·27>

②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部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

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改正 90·12·27>

③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關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關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 統一部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 統一部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部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 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部長官

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附 則 <생 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9·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지세)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생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4·12·23>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94·12·2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2·1>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2·1, 93·3·6, 94·12·23>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개정 99·5·24>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

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응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응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응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응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부 칙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통일부·소관비영리
법인의실업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인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 <생 략>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4·17 통일원고시 제91-1
 개정 1999·10·27 통일부고시 제99-4(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시집)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업무

제7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8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

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장 무상지원

제1절 주민왕래 지원자금

제9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 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

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98·12·31>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계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년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할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98·12·31>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 삭제 <98·12·31>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

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원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 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 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1절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7조 삭제 <98·12·31>

제48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 (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조건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99·10·27>

제51조 삭제 <98·21·31>

제52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절 반출·반입자금 대출 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삭제, 99·10·27>

제54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

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채무보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 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 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8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1절 금융기관 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 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차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차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차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손실보전신청 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조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 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65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

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98·12·31>

제66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장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별표 1]

대출제한기업

1.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운영방안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회생불가"로 분류한 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정상화불가"로 분류한 기업
2.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3.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4.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고인	성명 (단체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TEL) (FAX)		
②방문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방문기간	방문 증명서번호
			~ (박 일)	
			~ (박 일)	
			~ (박 일)	
③자금 수령액	금	자금 수령일자 및 금액 ○ 19 ○ 19 ○ 19		
③자금 사용액	금	자금 사용내역 ○ 교통비 : ○ 숙박비 : ○ 식비 : ○ 기타경비 :		
③자금 불용액	금	불용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 첨부서류: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주요자금사용증빙서(개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고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문화
 학술
 체육
] 협력지원자금신청서

①신청인	단체명 (성명)	한글 : 한자 :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협력사업 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③협력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장소			
③자금신청 내용	총소요자금			
	예상수익금			
	자금신청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기금사용계획서 1부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문화
 학술
 체육

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고인	단체명 (성명)	한글 : 한자 :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협력사업자 승인 번호	협력사업승인 (변경)번호	
②협력사업 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③협력사업 기간			
④협력사업 주요실적			
⑤자금사용총액		⑥협력사 업수익금	
⑦지원자금수령액			
⑧지원자금사용액			
⑨지원자금불용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고인 ⑩			
통일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조약정신청서

①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사 업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③사업개요	계약금액			
	사업내용			
	결 제 조 건			
	반출·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④손실보조 약정신청 내용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교역	<input type="checkbox"/> 경제협력사업	
	약 정 금 액		적용환율	
	손실보조약정비율		약정기간	
⑤ 기타사항	남북협력기금의 융자여부			
	특 기 사 항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제결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 면</p> <p style="text-align: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center;">신청인 ④</p>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 음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5.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6.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사업상대사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9.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	<input type="checkbox"/> 경제협력사업	}	자금대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반출		
	<input type="checkbox"/> 반입		

①차	주	②대표자
③주 소	(TEL)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⑥대출신청금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대출신청내용
 5. 이사회기재결의서 1부
 6.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9.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10.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2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①의뢰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채무보증 신청내용	보증한도		보증목적			
	수혜자					
	보증기간	-	(통산 년 월)			
③사업명						
④보증대상 채무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이율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방법					
	상환재원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결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음</td> </tr> </tabl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인쇄용지(복합)80g/m²)

(별지 제13호서식)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TEL) (FAX)		
②손실보전 신청내용	금 액			
	대상기간			

③손실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지원자금 신청내용	금액		지원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용자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용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용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15호서식]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 소	(TEL)		
	연락처	(FAX)		
②미결제 채권인수 신청내용	신 청 금 액			
	미결제채권잔액 (년 월 일현재)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대금결제구좌 거래명세표 사본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統一教育支援法

제정 1999. 2. 5 法律第5752號

第1條(目的) 이 法은 統一教育을 推
진하고 支援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統一教育”
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
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
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도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教育을 말한다.

第3條(統一教育의 基本原則) ①統一
教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
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教育은 개인적·과당적 目
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統一教育基本計劃의 수립) ①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教育基
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
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
內容
2. 統一教育 실시와 관련하여 各
部處 및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
한 사항
3. 統一教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
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教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教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
함에 있어서 미리 關係中央行政機
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
定에 의한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教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
부에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
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
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
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
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
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
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教育
의 실시, 統一問題研究의 振興,
統一教育要員의 양성·지원, 教材
의 開發·普及 기타의 方法으로
統一教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
(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第7條(統一教育의 반영) 國家 및 地
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教育訓練機

關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教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訓練課程에 統一教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一教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查機關 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부 칙 (생략)

第8條(學敎에서의 統一教育振興) ① 政府는 初·中等學敎에서의 統一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研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獎할 수 있다.

第9條(統一教育受講의 요청 등) ①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教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教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教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統一教育協議會) ①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教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통일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등)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이상 3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이상
2. 3월이상 6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이상
3. 6월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

간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생략>

第2編

13. 남북공동성명('72. 7. 4)	129
1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31
1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 관련 부속합의서	133
16.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136
1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139
18.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44
19. 남북공동선언(2000. 6. 15)	145
20.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46
21.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150
22.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59
2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61
24. 제네바 미·북 핵 기본 합의문	165
2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167
2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172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83

남북공동성명

1992년 7월 4일 발표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장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선을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 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
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

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진실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

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행 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관련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분쟁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진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배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

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상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

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 계선과 지금 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

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북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무원 총리 연 형 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

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이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우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방에 통보한다.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방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

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 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과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중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 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 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교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교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대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대한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 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대표하여	북측을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보장(제목에서)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몹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납부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 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법관계법령이 규

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미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 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

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 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

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영,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

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

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과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

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과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 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은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

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

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

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 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

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 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 남 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판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짐함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수익적 소유자	수익자
국채	정부유가증권
사용료	지적소유권사용료
대가	요금
독립적 인적용역	전문봉사활동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급여	로임
지급받은 보수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취인	수납인
귀속	이전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사업
지배	관리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차관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역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년도	해당 년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팔라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

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찰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 남 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제네바 미·북 핵 기본 합의문

미 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진다.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 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가. 미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관련 합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나.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관련 미국 대통령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 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다.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내 완전 이행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는 경수로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

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라.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체를 가진다.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가. 합의 후 3개월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나.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

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

관성 있게 취한다.

다.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 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가.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나.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방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다.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1994년 10월 21일

미합중국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
미합중국부대사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로버트 갈루치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 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가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2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와 북한의 체결된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개의 한국 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2) 제1호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

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

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 확보를 목표로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3조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제4조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 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 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5조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한다)이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와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한다)이 될 수 있다.

제6조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원회원국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다. 총회의 임시회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에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등을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에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예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 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원회위원의 국민이어야 한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결정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대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최상 수준의 성실성, 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원회원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게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

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지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다.

나.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제10조

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각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구

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의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자된다. 잉여자금은 제3조 차항에 규정된대로 분배된다.

제11조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 등

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12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와의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3조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 계약의 체결 (2) 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 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 동의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의 접수입자에 발표한다.

다.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사업(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 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공급범위)

1. KEDO는 북한에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업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

요한 기타 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 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수준에 상당하며, 이 조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험,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2조 (상환조건)

1.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며 북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상업 공급계약(주계약)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 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한 북한의 추가비용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사유 있는 부차위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의 이전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다. 북한이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상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3조 (인도 일정)

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3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 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이라 함은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수준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협정 제3

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과 필요한 일정조정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협정 제4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4조 (이행구조)

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인근 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

지 외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북한은 KEDO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에 위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영역 내에서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KEDO의 법적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들 모든 인원에게 대하여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른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 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0. 북한은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 기타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KEDO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작위, 부작위, 부채 또는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있을 경우 오

로지 KEDO의 재산과 자산에 대해서만 변재를 추구한다.

제5조 (부지 선정 및 조사)

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 지역을 대상으로 기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 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6조 (품질보장 및 보증)

1. KEDO는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수준에 따라 품질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 호기가 제3조 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된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신품이며, 완공 후 2년 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 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 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7조 (훈련)

1. KEDO는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 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동 훈련은 상호 협의하는 장소에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8조 (운전 및 유지 보수)

1.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

을 제외하고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2.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역을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 후 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4. 경수로 사용 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9조 (서비스)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북한의 원자력 통제 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 인도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수용 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가 허용된다. 경수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통행로가 고려된다.
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 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 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 서비스, 환전 및 여타 금융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 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 내의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각 장비 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전별 검토를 거쳐 북한의 통신 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

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제10조 (핵안전 및 규제)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 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 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발전소가 제1조 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 발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된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 장입전 시운전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 장입 후 시운전시험 결과와 운전요원에 대한 훈련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일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3항에 일치하는 사용 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4. 핵연료지함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 9. 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상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0. 3. 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경수로발전소 완공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핵 비상사태나 사고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제11조 (핵사고 책임)

1.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와 관련된(1963년 5월 21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 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경수로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연료지함체의 선적에 앞서 KEDO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

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인의 가해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 또는 '개인'이라 함은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12조(지적재산)

1. 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 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재산'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

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장)

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된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 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 기간 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 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나 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 하는 한 북한 영역 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 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으로 북한에 공급하는 KEDO 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안될 수 있다.

제14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을 이 협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수로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제15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

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후 30일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 후 30일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 중재재판절차는 재판소가 수립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 한다. 재판장의 임무수행비용과 기타 중재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6조 (불이행시 조치)

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황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범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17조 (개정)

- 이 협정은 양측의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18조 (발효)

-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당사자를 기속한다.
-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본부대사 사무총장 민공화국 외교부 본부대사 스테판 보즈워스 허중

제 1 부속서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 부지조사
- 부지정리, 평토, 부지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 준비
- KEDO가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내 도로, 부지에서 부지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 시설,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 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 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
- KEDO가 2기의 경수로 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장기계실을 포함
-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
- 발전소 인수시까지 요구되는 모든 시험
-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 자재 및 특수 공구

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 장정용 핵연료
10. 완전한 범위의 모의 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 계획
11.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 발전소의 운전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지원서비스
12. 전반적인 사업관리

제2부속서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 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확보
2. 북한내에서 이용 가능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
3. 2기의 경수로발전소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4. 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
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선로
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

가 훈련할 자질 있는 운전요원

제3부속서

이 협정 제3조 1항에 명시된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 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전에 원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핵심부품이라 함은 원자력 공급국 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 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

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핵부품의 인도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8. 경수로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를 시작하여 경수로 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추출된 사용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가 완공시까지 완료된다.

계에 부합되는 경수로 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의 건설

7. 핵중기공급시스템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 1호기 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
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 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

제4부속서

이 협정서의 제3조 3항에 언급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제3조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
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 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
6. 사업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的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

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1.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

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對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ㄷ.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

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ㄹ.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 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ㅁ.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ㅂ.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幫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시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시위원회본

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 ㄱ.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 ㄴ.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비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방해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성

-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鄉私民歸鄉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회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할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

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과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자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1.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2.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2목, 제13항

목록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목록, 제13항 목록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ㄴ.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ㄷ.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

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ㄹ.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ㅁ.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 강 룡(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
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
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
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
기록 부분은 매번 회의 후 가급
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
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어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
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
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
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
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
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
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
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
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
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

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
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
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
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
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
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
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
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
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
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
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
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
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
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
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
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
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
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때 한 阻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겐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l.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c.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는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총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7목에 규정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7.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

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

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

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다.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라. (1) 실행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

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

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원수 김 일성	맹 덕 회

< 참 석 자 >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윌리엄 K. 헤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	---------------------------------------

第3編

28. 大韓民國憲法	201
29. 國會法	217
3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49
3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53
3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57
33. 국가보안법	263

大韓民國憲法

제정 1948·7·17

개정 1987·10·29 헌법 제10조 국회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의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t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의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의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の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 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국민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국민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국민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국민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국민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국민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국민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

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국민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국민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국민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국민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中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

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相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相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鬥·訓練等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衡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和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保障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之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은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

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之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의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裁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 в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 в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 總數의 3分の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大統領이 關位된 때 또는 大統領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의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關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需要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需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は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は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重要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

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重要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重要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

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關於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定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關於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定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關於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定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關於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定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定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於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 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定한다.

第5章 法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

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的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的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的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舉管理

第114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

를 둔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保障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關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

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和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均衡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の 提高와 農地의 合

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貸借與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均衡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保護·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 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保護·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保護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健全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추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회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회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회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과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제10호, 1987.10.29〉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 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은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회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회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國會法

개정
개정 2002. 3. 7 법률 제6657호 국회

第1條(目的) 이 법은 國會의 組織·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의 民主的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당선통지 및 登錄) ①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國會議員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그 名單을 즉시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國會議員當選人은 當選人으로 決定된 후 當選證書를 國會事務處에 제시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第3條(議席配定) 國會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議席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定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暫定的으로 이를 定한다.

第4條(定期會) 定期會는 매년 9월 1일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

第5條(臨時會) ①臨時會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集會期日 3日전에 公告한다. 이 경우 2이상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集會日이 빠른 것을 公告하되, 集會日이 같은 때에는 그 要求書가 먼저 제출된 것을 公告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 國家의 安危에 關係되는 중대한 交戰狀態나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는 集會期日 1日전에 公告할 수 있다.

③國會議員總選舉후 최초의 臨時會는 議員의 任期開始후 7일에 集會하며, 처음 選出된 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가 閉會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任期滿了日 5日전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

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①議長은 國會의 年中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 12月 31일까지 다음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을 定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지 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臨時會를 集會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가 있는 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는 30日로 한다.

3. 會期는 週單位로 운영하되, 月曜日부터 水曜日까지는 委員會활동, 木曜日은 本會議 활동을 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 중 1週는 政府에 대하여 質問을 行한다.

第5條의3(法律案提出計劃의 통지)

政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月 31일까지 당해 年度

에 제출할 法律案에 관한 計劃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변경한 때에는 分期別로 주요 사항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6條(開會式) 國會는 集會日에 開會式을 행한다. 다만, 臨時會의 경우에는 開會式을 생략할 수 있다.

第7條(會期) ①國會의 會期는 議決로 이를 정하되, 議決로 延長할 수 있다.

②國會의 會期는 集會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第8條(休會) ①國會는 議決로 期間을 정하여 休會할 수 있다.

②國會의 休會중이라도 大統領의 요구가 있을 때, 議長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在籍議員 4分の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會議을 再開한다.

第9條(議長·副議長の 任期) ①議長과 副議長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選出된 議長과 副議長の 任期는 그 選出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補闕選舉에 의하여 당선된 議長 또는 副議長の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0條(議長의 職務) 議長은 國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유지하고 사무를 監督한다.

第11條(議長의 委員會出席과 發言)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

第12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①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지정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②議長이 心神喪失 등 부득이한 사유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게되어 職務代理者를 指定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渉團體所屬인 副議長의 順으로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13條(臨時議長)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14條(事務總長の 議長職務代行) 國會議員總選舉후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의 臨時會의 集會公告에 관하여는 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최초로 選出된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滿了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議長이나 副議長을 選出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議長·副議長の 選舉) ①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 選舉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得票로 當選된다.

②第1項의 選舉는 國會議員總選舉후 最初集會日에 실시하며,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③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16條(補闕選舉)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 補闕選舉를 실시한다.

第17條(臨時議長の 選舉) 臨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舉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多數의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18條(議長등 選舉時의 議長職務代行) 議長등 選舉에 있어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出席議員중 最多選議員이, 最多選議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年長者가 議長の 職務를 代行한다.

1. 國會議員總選舉후 최초의 集會에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舉할 때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議長과 副議長의 選舉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任期滿了후 議長과 副議長을 選舉할 때
3.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되어 그 補闕選舉를 할 때
4. 議長 또는 副議長의 補闕選舉에 있어서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
5.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어 臨時議長을 選舉할 때

第19條(議長·副議長의 辭任) 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第20條(議長·副議長의 兼職制限)

①議長과 副議長은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員외의 職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職을 겸한 議員이 議長 또는 副議長으로 當選된 때에는 當選된 날에 그 職에서 解職된 것으

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 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第21條(國會事務處) ①國會의 立法·豫算決算審査등의 活動을 지원하고 行政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國會事務處에 事務總長 1인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本會議의 승인을 얻어 任免한다.

④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사무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⑤國會事務處는 國會의 立法 및 豫算決算審査등의 活動을 지원함에 있어 議員 또는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資料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第5項에서 規定한 사항과 관련하여 事務總長 또는 事務總長이 지정하는 所屬公務員은 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委員會에서 보고·說明할 수 있으며, 事務總長은 議長의 許可를 얻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

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國會事務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22條(國會圖書館) ①國會的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②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④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23條(國會的 經費) ①國會的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計上한다.

②議長은 國會運營委員會에서 정한 國會所管豫算要求書作成基準에 따라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하여 國會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政府에 제출한다. 議長이 國會所管豫算要求書를 작성할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委員會 委員長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第1項의 豫算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④國會的 豫備金은 事務總長이 管理하되,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와 議長의 승인을 얻어 支出한다. 다만, 閉會중일 때에는 議長의 승인으로 支出하고 다음 會期初에 國會運營委員會에 보고한다.

⑤政府가 豫算會計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會所管歲出豫算要求

額의 削減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削減內容 및 사유를 기재하여 國務會議 7日전까지 이를 議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議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削減內容에 대한 의견을 당해 國務會議 1日전까지 政府에 송부한다.

第24條(宣誓) 議員은 任期初에 國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25條(品位維持의 義務) 議員은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第26條(逮捕同意要請의 節次)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 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第27條(議員逮捕의 통지) 政府는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議長에게 令狀의 寫本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拘束期間의 延長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28條(釋放要求의 節次) 議員이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釋放要求를 發議할 때에는 20人이상의

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9條(兼職) ①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國家公務員法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運動이 허용되는 公務員은 제외한다.
2. 大統領·憲法裁判所裁判官·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地方議會 議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의 任·職員
6. 政黨法 第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②議員이 當選전부터 第1項의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에 그 職에서 解職된다.

③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任期中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

④議員이 當選전부터 다른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후 1月이내에, 任期中에 다른 職에 就任한 경우에는 就任후 15日이내에 議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議長은 議員이 다른 職을 겸하

는 것이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職을 辭任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30條(手當·旅費) 議員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旅費를 받는다.

第31條(交通機關利用) 議員은 國有의 鐵道·船舶과 航空機에 無料로 乘用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公務의 경우에 한한다.

第32條(請暇 및 缺席) ①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國會에 出席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請暇書 또는 缺席屆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議員이 請暇書를 제출하여 議長의 許可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缺席하여 缺席屆를 제출한 경우에는 國會議員手當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別活動費에서 그 缺席한 會議日數에 상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③第1項의 請暇 및 缺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3條(交涉團體) ①國會에 20인 이상의 所屬議員을 가진 政黨은 하나의 交涉團體가 된다. 그러나 다른 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議員으로 따로 交涉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그 團體의 所屬議員이 連署·捺印한 名簿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所屬議員에 異動이 있거나 所屬政黨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議員이 關係書類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交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이 黨籍을 취득하거나 所屬政黨을 變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4條(交渉團體政策研究委員) ① 交渉團體所屬議員의 立法活動을 補佐하기 위하여 交渉團體에 政策研究委員을 둔다.

② 政策研究委員은 당해 交渉團體代表議員의 提請에 따라 議長이 任免한다.

③ 政策研究委員은 別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人員·資格·任免節次·職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5條(委員會의 종류) 國會의 委員會는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第36條(常任委員會의 職務)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기타 法律에서 정하는 職務를 행한다.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 가. 國會運營에 관한 사항
 -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사항
 -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 라. 國會圖書館所管에 속하는 사항
2. 法制司法委員會
 -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 다. 監查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 라. 憲法裁判所事務에 관한 사항
 - 마. 法院·軍事法院의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

바. 彈劾訴追에 관한 사항
사. 法律案·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관한 사항

3. 政務委員會

- 가. 國務總理室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國家報勳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 다. 公正去來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 라. 金融監督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4. 財政經濟委員會

- 가. 財政經濟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韓國銀行所管에 속하는 사항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 가. 統一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外交通商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6. 國防委員會

-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7. 行政自治委員會

- 가. 行政自治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사항
- 다. 地方自治團體에 관한 사항

8. 教育委員會

教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9.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 가. 科學技術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情報通信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0. 文化觀光委員會

-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11. 農林海洋水産委員會

- 가. 農林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나. 海洋水産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12. 産業資源委員會
産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13. 保健福祉委員會
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14. 環境勞動委員會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勞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15. 建設交通委員會
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情報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 17. 女性委員會
女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②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제15차~제22차 國會議 개정시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및 명칭변경이 있었음(상세 개정연혁은 생략)】

第38條(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는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情報委員會의 委員定數는 12人으로 한다.

第39條(常任委員會의 委員) ①議員은 2이상의 常任委員會의 委員(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②각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國會運營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③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④國務總理·國務委員·國務調整室長·處의 長, 行政各部의 次官 기타 國家公務員의 職을 겸한 議

員은 常任委員을 辭任할 수 있다.
第40條(常任委員의 任期) ①常任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2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情報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議員의 任期동안 在任한다.

③補任 또는 改選된 常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41條(常任委員長) ①常任委員會에 委員長(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人을 둔다.

②常任委員長은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당해 常任委員중에서 臨時議長選舉의 에에 準하여 國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選舉한다.

③第2項의 選舉는 國會議員總選舉后 最初集會日부터 3日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選出된 常任委員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까지 실시한다.

④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⑤常任委員長은 本會議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第42條(專門委員과 公務員) ①委員會에 委員長 및 委員의 立法活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委員會에 두는 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③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國政監查, 國政調査 기타 所管事項과 관련하여 檢討報告 및 關聯資料의 蒐集·調査·研究를 行한다.

④ 專門委員은 第3項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委員長 名義로 하여야 한다.

⑤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第43條(專門家の 활용) ① 委員會는 그 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3人이 內的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②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長이 議長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議長은 豫算事情등을 감안하여 그 人員 또는 위촉기간등을 調整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審査補助者는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資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家公務員法 第7章 服務에 關한 規定이 準用된다.

④ 위촉된 審査補助者에 對한 手當

의 支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定한다.

第44條(特別委員會) ① 國會는 數個의 常任委員會所管과 關聯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案件을 효율적으로 審査하기 위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할 때에는 그 活動期限을 定하여야 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特別委員會는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存續한다. 다만,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報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審査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 豫算案과 決算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數는 50人으로 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各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 議長이 行한다.

③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1年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補任 또는 改選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중에서 臨時議長選舉의 예에 準하여 本會

議에서 選舉한다.

⑤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第41條第3項 내지 第5項, 第48條第1項 後段 및 第2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의 選舉 및 任期등과 委員의 選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6條(倫理特別委員會) ①議員의 資格審査·倫理審査 및 懲戒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倫理特別委員會를 둔다.

②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倫理特別委員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倫理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와 委員長의 任期 및 選舉등에 관하여는 第40條第1項 및 第3項, 第41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倫理特別委員會의 構成과 이 法에 정한 이외의 委員會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46條의2 삭제 (2002. 3. 7)

第46條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①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監查院長 및 大法官과 國會에서 選出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에 대한 任命同意案 또는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제출한 選出案등을 審査하기 위하여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둔다.

②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47條(特別委員會의 委員長) ①特別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②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는 委員중 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常任委員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 議長이 選任 및 改選한다. 이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國會議員總選舉후 최초의 臨時會의 集會日부터 2日 이내에 그리고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選任된 常任委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전 3日 이내에 議長에게 委員의 選任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期限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議長이 委員을 選任할 수 있다.

②어느 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常任委員選任은 議長이 이를 행한다.

③情報委員會의 委員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으로부터 당해 交涉團體所屬議員중에서 候補를 추천받아 副議長 및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選任 또는 改選한다. 다만,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情報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④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議長이 常任委員중에서 選任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이 本會議에서 議決된 날부터 5日이 내에 하여야 한다.

⑤委員의 選任이 있는 후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委員會의 交涉團體別 割當數를 변경하여 委員을 改選할 수 있다.

⑥議長 및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議員이 企業體 또는 團體의 任·職員등 다른 職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職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 選任하는 것이 公정을 기할 수 없는 顯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 選任하거나 選任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9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유지하고 사무를 監督한다.

②委員長은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時를 幹事와 協議하여 정한다.

第50條(幹事) ①委員會에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둔다.

②幹事は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이를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幹事が 委員長の 職務를 代理한다.

④委員長이 關位된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幹事の 順으로 委員長の 職務를 代理한다.

⑤委員長이 委員會의 開會 또는 議事進行을 거부·기피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委員會가 活動

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所屬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幹事の 順으로 委員長の 職務를 代行한다.

第51條(委員會의 提案) ①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法律案 기타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議案은 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第52條(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4分の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開會한다.

第53條(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①常任委員會(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閉會중 최소한 月 2回 정례적으로 開會(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情報委員會는 최소한 月 1회로 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定例會議의 開會日을 委員會의 議決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開會 週·曜日을 지정하여 자동 開會한다.

③定例會議는 당해 常任委員會에 계류중인 法律案 및 請願 기타 案件과 主要懸案등을 審査한다.

④常任委員會가 定例會議 당일의 議事日程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하거나 委員會의 議決로 會議를 延長할 수 있다.

第54條(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委員會는 在籍委員 5分の 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54條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

例) ①情報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②情報委員會의 委員 및 所屬公務員(議員補助職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遂行상 알게 된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을 公開하거나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情報委員會의 활동을 補佐하는 所屬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家情報院長에게 身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이 法에 정한 외에 情報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55條(委員會에서의 傍聽등) ①委員會에서는 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傍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56條(本會議중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各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會議중에는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國會運營委員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7條(小委員會) ①委員會는 특정한 案件의 審査를 위하여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査하기 위하여 3개의 常設小委員會를 둔다.

③常設小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小委員會의 委員중에서 選出하고 이를 本會議에 보고하며, 小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이 小委

員會의 委員중에서 지정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小委員會의 활동은 委員會가 議決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小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小委員會는 閉會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議決로 議案의 審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⑦小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委員會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 다만, 小委員會는 逐條審査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⑧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1項의 小委員會외에 그 審査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數個의 分科委員會로 나눌 수 있다.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大體討論(案件 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當否에 관한 一般的 討論을 말하며 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함한다)과 逐條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②常任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이를 審査·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委員會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委員會가 案件을 小委員會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體討論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逐條審査는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委員會는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公聽會 또는 聽聞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案件이 豫算상의 措置를 隨伴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案件의 委員會上程日 48時間전까지 所屬委員에게 配付되어야 한다.

⑧第4項 但書 및 第5項의 規定은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5日(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의 경우에는 3日)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委員의 發言) ①委員은 委員會에서 同一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등에 제한없이 發言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은 發言을 원

하는 委員이 2人이상일 경우에는 幹事와 協議하여 15分의 범위안에서 각 委員의 첫번째 發言時間을 均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委員會에서의 質疑는 一問一答의 方式으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 一括質疑의 方式으로 할 수 있다.

第61條(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聽取) 委員會는 案件에 관하여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을 들을 수 있다.

第62條(非公開會議錄등의 閱覽과 帶出禁止) 委員長은 議員으로부터 非公開會議錄 기타 秘密參考資料의 閱覽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審査·監査 또는 調査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國會 밖으로는 帶出하지 못한다.

第63條(連席會議) ①所管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協議하여 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交換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은 할 수 없다.

②連席會議를 열고자 하는 委員會는 委員長이 附議한 案件名과 이유를 書面으로 제시하여 다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連席會議는 案件의 所管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④歲入豫算案과 관련있는 法案을 회부받은 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連席會議를 열어야 한다.

第63條의2(全院委員會) ①國會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거나 委員會가 提案한 議案중 政府組織에 관한 法律案, 租稅 또는 國民에게 부담을 주는 法律案 등 主要議案의 本會議上程전이나 本會議上程 후에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

구가 있는 때에는 그 審査를 위하여 議員全員으로 구성되는 全院委員會를 開會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主要議案의 審査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同意를 얻어 全院委員會를 開會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全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案에 대한 修正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修正案은 全院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③全院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議長이 지명하는 副議長으로 한다.

④全院委員會는 第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籍委員 5分の 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4分の 1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全院委員會는 계속하여 2日 이내 1日 2時間의 범위내에서 議案에 대한 審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發言時間은 5分 이내로 한다.

⑥기타 全院委員會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4條(公聽會) ①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로 公聽會를 열고 利害關係者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者 등(이하 "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②委員會에서 公聽會를 열 때에는 案件·日時·場所·陳述人·經費 기타 參考事項을 기재한 文書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陳述人의 選定과 陳述人 및 委員의 發言時間은 委員會에서 정하며, 陳述人의 發言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案件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委員會가 主管하는 公聽會는 그 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⑤기타 公聽會運營에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5條(聽聞會) ①委員會는 중요한 案件(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함한다)의 審査에 필요한 경우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요구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③委員會는 聽聞會開會 5日전에 案件·日時·場所·證人 등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聽聞會는 公開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聽聞會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專門家를 위촉하여 聽聞會에 필요한 事前調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聽聞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 따른다.

⑦第6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聽聞會에 準用한다.

⑧기타 聽聞會運營에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第4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人事에 관한 聽聞會(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②人事聽聞會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66條(審査報告書의 제출) ①委員會는 案件의 審査를 마친 때에는 審査經過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書面으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少數意見의 要旨 및 關聯委員會의 意見要旨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報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本會議에서 議題가 되기 전에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第67條(委員長의 보고) ①委員長은 所管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때에는 委員會의 審査經過 및 결과와 少數意見 및 關聯委員會의 意見등 필요한 사항을 本會議에 보고한다.

②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長은 小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幹事로 하여금 補充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④委員長이 第1項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第68條(小委員會委員長の 보고) 小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審査經過와 결과를 委員會에 보고한다. 이 경우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審査報告書에 小委員會의 會議錄 또는

그 要旨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69條(委員會會議錄) ①委員會는 委員會 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2. 議事日程
3. 出席委員의 姓名
4. 출석한 委員아닌 議員의 姓名
5. 출석한 國務委員·政府委員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陳述人의 姓名
6. 審査案件名
7. 議事
8. 表決數
9. 委員長의 보고
10. 委員會에서 終結되거나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案件名과 그 내용
11. 기타 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의 議事は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③委員會 會議錄에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代理한 幹事が 署名·捺印한다.

④小委員會의 會議錄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事に 관하여 速記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要旨를 구체적으로 記錄할 수 있다.

第70條(委員會의 文書管理와 발간)

①委員會에 제출된 報告書 또는 書類등은 당해 委員會의 文書로 한다.

②委員長은 文書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書類와 분리하여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③委員은 당해 委員會의 文書를

일람하거나 秘密이 아닌 文書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의 許可가 있는 경우에는 委員 아닌 議員도 또한 같다.

④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委員會의 公聽會 또는 聽聞會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文書를 발간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 일반에게 頒布할 수 있다.

⑤委員會에서 生産되거나 委員會에 제출된 秘密文件의 保安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議長이 이를 정한다.

⑥기타 委員會의 文書保管에 필요한 事項은 委員長이 정한다.

第71條(準用規定) 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외에 第6章 및 第7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委員會에서의 動議는 특별히 多數의 贊成者를 요하는 規定에 불구하고 動議者의 1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될 수 있으며 表決에 있어서는 舉手로 表決할 수 있다.

第72條(開議) 本會議는 午後 2時(土曜日은 午前 10時)에 開議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그 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第73條(議事定足數) ①本會議는 在籍議員 5分の 1이상의 出席으로 開議한다.

②議長은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開議時로부터 1時間이 경과할 때까지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流會를 宣布할 수 있다.

③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

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다만, 議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이 議事定足數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會議를 계속할 수 있다.

第74條(散會)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의 議事が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散會를 宣布한다.

第75條(會議의 公開) ①本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 1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에 의한 提議나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76條(議事日程의 작성) ①議長은 本會議에 附議要請된 案件의 目錄을 그 順序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公表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開議日時·附議案件과 그 順序를 기재한 議事日程을 작성하고 늦어도 本會議開議 前日까지 本會議에 보고한다. 그러나 再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議事日程의 작성에 있어서는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④議長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의 日時만을 議員에게 통지하고 開議할 수 있다.

第77條(議事日程의 變更) 議員 2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動議에는 理由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78條(議事日程의 未了案件) 議長은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會議을 열지 못하였거나 會議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日程을 정한다.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 議員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② 議案을 發議하는 議員은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豫算上의 措置가 隨伴하는 法律案 기타 議案의 경우에는 豫算明細書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③ 議員이 法律案을 發議하는 때에는 發議議員과 贊成議員을 구분하되, 당해 法律案에 대하여 그 題名의 副題로 發議議員의 姓名을 기재한다. 다만, 發議議員이 2人 이상인 경우에는 代表發議議員 1人을 明示하여야 한다.

④ 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중 國會에서 議決된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改正法律案을 公表 또는 弘報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律案의 副題를 함께 表記할 수 있다.

第80條(國會公報 및 立法詢報의 발간) ① 議長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運營 및 議事日程, 發議 또는 제출되거나 審査豫定인 議案目錄, 國會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國會公報를 발간하여 議員에게 配付한다.

② 第1項의 國會公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會期中 매일 발간한다.

③ 議長은 매 會期初 및 會期中 議案의 發議, 審査經過등 議員의 立法活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立法詢報를 발간하여 議員에게 주기적으로 配付한다.

④ 國會公報와 立法詢報의 발간 및 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

第81條(常任委員會 回附) ① 議長은 議案이 發議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 本會議에 보고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 등으로 本會議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議長은 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常任委員會에 회부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所管常任委員會를 決定한다.

③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案을 議員에게 配付할 때에는 이를 電算網에 입력하여 議員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82條(特別委員會 回附) ① 議長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이를 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

② 議長은 特別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에 관련이 있는 다른 案件을 그 特別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82條의2(立法豫告) ① 委員會는 審

查對象인 法律案에 대하여 그 立法趣旨·주요내용등을 國會公報등에 게재하여 立法豫告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하여 豫告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法豫告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立法豫告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83條(關聯委員會 回附) ①議長은 所管委員會에 案件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案件이 다른 委員會의 所管事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聯委員會에 이를 회부하되, 所管委員會와 關聯委員會를 명시하여야 한다. 案件이 所管委員會에 회부된 후 다른 委員會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議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委員會에 案件을 회부할 때에는 關聯委員會가 所管委員會에 그 의견을 제시할 期間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③所管委員會는 關聯委員會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第2項의 期間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審査報告를 할 수 있다.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豫算案과 決算은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고, 所管常任委員會는 豫備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議長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豫算案에 대하여는 本會議에서 政府의 施政演說을 듣는다.

②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에 第1項의 報告書를 첨부하여 이를 豫算

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③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및 決算의 審査는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綜合政策質疑, 部別審査 또는 分科委員會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이 경우 委員長은 綜合政策質疑를 함에 있어서 幹事와 協議하여 각 交涉團體別 代表質疑 또는 交涉團體別 質疑時間割當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情報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情報院所管 豫算案과 決算,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에 대한 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部處別 總額으로 하여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情報委員會에서 審査한 豫算案과 決算에 대하여 總額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登보한다. 이 경우 情報委員會의 審査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로 본다.

⑤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所管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內容을 존중한다.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歲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게 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所管常任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⑥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을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할 때에는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常任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⑦常任委員會는 所管部處에 대한 決算豫備審査를 國政監査 실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⑧委員會는 稅目 또는 稅率과 관계있는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歲入豫算案은 이를 審査할 수 없다.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85條(審査期間) ①議長은 審査期間을 정하여 案件을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 中間報告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에 회부하거나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마치거나 立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法制司法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 그 審査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討論을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審査에 대하여 議長은 각 交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

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87條(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①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중의 期間을 제외한 7日이내에 議員 30人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 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第88條(委員會의 提出議案) 委員會에서 제출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長은 國會運營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이를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89條(動議) 이 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動議는 動議者의 1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된다.

第90條(議案·動議의 撤回) ①議員은 그가 發議한 議案 또는 動議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本會議의,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政府提出의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91條(竊案) ①本會議에 있어서의 竊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 發議議員 및 贊成議員 3分の 2이상의 同意로, 政府 또는 委員會가 제출한 議案은 所管委員會의 議決로, 각각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

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議案이 政府에 移送된 후에는 翻案할 수 없다.

②委員會에 있어서의 翻案動議는 委員의 動議로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에는 翻案할 수 없다.

第92條(一事不再議)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第93條(案件審議) 本會議는 案件을 審議함에 있어서 그 案件을 審査한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듣고 質疑·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지 아니한 案件에 대하여는 提案者가 그 趣旨를 說明하여야 하고, 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案件에 대하여는 議決로 質疑와 討論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 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4條(再回附) 本會議는 委員長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다시 그 案件을 같은 委員會 또는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95條(修正動議) ①議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議員 30人이상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미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員 50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贊成없이 議題가 된다.

③委員會는 所管事項외의 案件에 대하여는 修正案을 제출할 수 없다.

④議案에 대한 代案은 委員會에서 그 原案을 審査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議長은 이를 그 委員會에 회부한다.

第96條(修正案의 表決順序) ①同一 議題에 대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제출된 때에는 議長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表決의 順序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修正案부터 먼저 表決한다.

2. 議員의 修正案은 委員會의 修正案보다 먼저 表決한다.

3. 議員의 修正案이 數個있을 때에는 原案과 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表決한다.

②修正案이 전부 否決된 때에는 原案을 表決한다.

第97條(議案의 整理) 本會議는 議案의 議決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條項·字句·數字 기타의 整理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議長 또는 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98條(議案의 移送) ①國會에서 議決된 議案은 議長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

②政府는 大統領이 法律案을 公布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憲法 第53條第6項의 規定에 의

하여 大統領이 公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布期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5日이내에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이 경우에는 大統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 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訓令·例規·告示 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10日이내에 이를 國會 所管常任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期間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理由를 所管常任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檢討하여 당해 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專門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를 당해 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第99條(發言의 許可)

①議員이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게 통지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發言通知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통지를 한 議員의 發言이 끝난 다음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③議事進行에 관한 發言은 發言要

旨를 議長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議長은 議題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許可하고, 그외의 것은 議長이 그 許可의 時期를 정한다.

第100條(發言의 계속)

發言은 그 途中에 다른 議員의 發言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 中止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가 開始되면 議長은 먼저 發言을 계속하게 한다.

第101條(補充報告)

議長은 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指名한 少數意見자가 委員會의 보고를 補充하기 위하여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發言에 우선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第102條(議題외 發言의 금지)

모든 發言은 議題외에 미치거나 許可받은 發言의 性質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3條(發言回數의 제한)

議員은 同一議題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質疑에 대하여 答辯할 때와 委員長·發議者 또는 動議者가 그 趣旨를 說明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4條(發言原則)

①政府에 대한 質問외의 議員의 發言時間은 15分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長이 정한다. 다만, 議事進行發言·身上發言 및 補充發言은 5分을, 다른 議員의 發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②交涉團體를 가진 政黨을 代表하는 議員이나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이 政黨 또는 交涉團體를 代表하여 演說 기타 發言을 할 때에는 40分까지 發言할 수 있다.

③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同一議題에 대한 總發言 時間을 정하여 이를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할당된 時間내에서 發言者數 및 發言者別 發言時間을 정하여 미리 議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필요한 경우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同一議題에 대하여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發言者數를 정할 수 있다.

⑤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發言時間 및 發言者數는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⑥議員이 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議長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게재할 수 있다.

第105條(5分自由發言) ①議長은 本會議가 開議되는 경우 그 開議時로부터 1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議員에게 國會가 審議중인 議案과 請願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分이내의 發言(이하 "5分自由發言"이라 한다)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당일 本會議에서 審議할 議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開議중에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5分自由發言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늦어도 本會議開議 4時間전까지 그 發言趣旨를 간략히 기재

하여 議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5分自由發言의 發言者數와 發言順序는 交涉團體別 所屬議員數의 比率을 고려하여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第106條(討論의 통지) ①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反對 또는 贊成의 뜻을 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順序와 그 所屬交涉團體를 고려하여 反對者와 贊成者를 交代로 發言하게 하되 反對者에게 먼저 發言하게 한다.

第107條(議長의 討論參加) 議長이 討論에 참가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案件에 대한 表決이 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第108條(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①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②각 交涉團體에서 1인이상의 發言이 있는 후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議長은 質疑나 討論의 終結을 宣布한다. 그러나 質疑 또는 討論에 참가한 議員은 質疑나 討論의 終結을 動議할 수 없다.

③第2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109條(議決定足數) 議事는 憲法 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10條(表決의 宣布) ①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題目을 議長席에서 宣布하여야 한다.

②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案件에 관하여 發言할 수 없다.

第111條(表決의 참가와 意思變更의 금지) ①表決을 할 때에는 會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記名·無記名投票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投票函이 閉鎖될 때까지 表決에 참가할 수 있다.

②議員은 表決에 있어서 표시한 意思를 變更할 수 없다.

第112條(表決方法) ①表決할 때에는 電子投票에 의한 記錄表決로 可否를 決定한다. 다만, 投票器機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起立表決로 可否를 決定할 수 있다.

②중요한 案件으로서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在籍議員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記名·呼名 또는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③議長은 案件에 대한 異議의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방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④憲法改正案은 記名投票로 表決한다.

⑤大統領으로부터 還付된 法律案과 기타 人事에 관한 案件은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다만, 兼職으로 인한 議員辭職과 委員長辭任에 대하여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國會에서 실시하는 각종 選舉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無

記名投票로 한다. 投票의 결과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다만, 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⑦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建議案이 發議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期間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解任建議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第113條(表決結果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議長席에서 宣布한다.

第114條(記名·無記名投票節次) ①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각 議員은 먼저 名牌를 名牌函에, 다음에 投票用紙를 投票函에 投入한다.

②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에서 若干人의 監票委員을 指名하고 그 委員의 참여하여 職員으로 하여금 名牌와 投票의 數를 點檢·計算하게 한다. 이 경우 監票委員으로 指名된 議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議員을 제외하거나 다른 議員을 監票委員으로 指名할 수 있다. ③投票의 數가 名牌의 數보다 많을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다만, 投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第115條(會議錄) ①國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2. 議事日程
3. 出席議員의 數
4. 開會式에 관한 사항
5. 議員의 異動
6. 議席의 配定과 變動
7. 議案의 發議·제출·회부·還付·移送과 撤回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姓名
9. 附議案件과 그 내용
10. 議長의 보고
11. 委員會의 報告書
12. 議事
13. 表決數
14. 記名·電子·呼名投票의 投票者 및 贊反議員 姓名
15. 議員의 發言補充書
16. 書面質問과 答辯書
17. 政府의 請願處理結果報告書
18. 政府의 國政監査 또는 調查結果處理報告書
19. 기타 本會議 또는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本會議의 議事는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③會議錄에는 議長, 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臨時議長과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者가 署名·捺印하여 國會에 보존한다.

第116條(參考文書의 게재) 議員이 그 發言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會議錄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117條(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①發言한 議員은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다음날 午後 5時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 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發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②會議에서 發言한 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 기타 發言者에 있어서도 第1項과 같다.

③議員이 會議錄에 기재한 사항과 會議錄의 訂正에 관하여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本會議의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第118條(會議錄의 配付·頒布) ①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한다. 그러나 議長이 秘密을 요하거나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發言者 또는 그 所屬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議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會議錄部分에 관하여 閱覽·複寫등을 申請한 때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議長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2項에 의하여 許可받은 議員은 타인에게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轉載·複寫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내용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 또는 議長의 決定으로 第1項 但書의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이를 公表할 수 있다.

⑤公表할 수 있는 會議錄은 一般에게 有價으로 頒布할 수 있다.

⑥會議錄의 公表에 관한 期間·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19條(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의 任免通知) 政府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인

公務員을 任免한 때에는 이를 國會에 통지한다.

第120條(國務委員등의 發言)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은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그 所管事務에 관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21條(國務委員등의 出席요구) ①本會議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出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發議는 議員 20人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出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요구를 받은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의 승인을 얻어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委員은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代理하여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 議員과, 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특정한 事案에 대하여 質問하기 위하여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監查院長 또는 그 代理人의 出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22條(政府에 대한 書面質問) ①議員이 政府에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質問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質問書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

③政府는 質問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으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 期間내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答辯할 수 있는 期限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書面質問에 대하여 答辯할 때 會議錄에 게재할 答辯書와 기타 答辯關係資料를 구분하여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하여 質問하고자 하는 議員은 書面으로 다시 質問할 수 있다.

第122條의2(政府에 대한 質問) ①本會議는 會期中 기간을 정하여 國政全般 또는 國政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政府에 대하여 質問(이하 "對政府質問"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對政府質問은 冒頭質問을 마친 후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議員의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 時間은 각각 15分을 초과할 수 없다.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 時間의 경우에는 答辯을 포함한다.

③議題別 議員의 冒頭質問과 一問一答에 의한 補充質問에 소요되는 總時間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 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④議長은 第3項에서 規定한 總質問

時間을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配定하며, 각 交涉團體는 配定된 質問時間의 범위 안에서 質問者數와 質問者別 質問時間을 정한다. 이 경우 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質問者數와 質問時間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⑤議長은 議員의 質問과 政府의 答辯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質問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冒頭質問의 要旨와 所要時間을 기재한 質問要旨書を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議長은 늦어도 質問時間 48時間전까지 質問要旨書가 政府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質問議員과 그 質問配定時間 및 質問順序를 質問日前日까지 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통지내용에 따라 質問順序를 정한 후 이를 本會議開議전에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政府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122條의3(緊急懸案質問) ①議員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會期中 懸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政府에 대하여 質問(이하 이條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을 할 것을 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懸案質問을 요구하는 議員은 그 이유와 質問要旨 및 출석을 요구하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을 기재한 質問要求書를 本會議開議 24時間전까지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質問要求書가 접수된 때

에는 그 실시여부와 議事日程을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정한다. 다만, 議長은 필요한 경우 本會議에서 그 실시여부를 表決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長의 決定 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해당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한 출석요구의 議決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緊急懸案質問時間은 總 120分으로 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緊急懸案質問을 할 때의 議員의 質問은 10分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補充質問은 5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⑦緊急懸案質問의 節次등에 관하여 이條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122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3條(請願書의 제출) ①國會에 請願을 하려고 하는 者는 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을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裁判에 간섭하거나 國家機關을 冒瀆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第124條(請願要旨書의 작성과 회부) ①議長은 請願을 접수한 때에는 請願要旨書를 작성하여 각 議員에게 印刷·配付하는 동시에 그 請願書를 所管委員會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②請願要旨書에는 請願者의 住所·

姓名·請願의 要旨·紹介議員의 姓名과 接受年月日을 기재한다.

第125條(請願審査·보고등) ①委員會는 請願審査를 위하여 請願審査小委員會를 둔다.

②委員長은 閉會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請願을 바로 請願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하여 審査報告하게 할 수 있다.

③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所管委員會 또는 請願審査小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趣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그 議決로 委員 또는 專門委員을 現場이나 關係機關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決定한 請願은 意見書를 첨부하여 議長에게 보고한다.

⑥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請願은 그 처리결과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 제외한 7日이내에 議員 30人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本會議에 附議한다.

⑦請願審査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26條(政府移送과 처리보고) ①國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政府에서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 意見書를 첨부하여 政府에 移送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27條(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

會議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후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을 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29條(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の 출석요구)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の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즉시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本會議가 第1項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기로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 이내에 彈劾訴追의 여부를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기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彈劾訴追의 發議에는 被訴追者の 姓名·職位와 彈劾訴追의 사유·증거 기타 調査上 참고가 될 만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131條(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①法制司法委員會가 第130條의 發議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調査·보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調査에 있어서는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이 規定하는

調査의 방법 및 調査上의 注意義務規定을 準用한다.

第132條(調査의 協助) 調査를 받는 國家機關은 그 調査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協助를 하여야 한다.

第133條(彈劾訴追의 議決) 本會議의 彈劾訴追의 議決은 被訴追者の 姓名·職位 및 彈劾訴追의 사유를 표시한 文書(이하 "訴追議決書"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第134條(訴追議決書의 송달과 效果) ①彈劾訴追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지체없이 訴追議決書의 正本을 法制司法委員長인 訴追委員에게, 그 謄本을 憲法裁判所·被訴追者와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송달한다.

②訴追議決書가 송달된 때에는 被訴追者の 權限行使는 정지되며, 任命權者는 被訴追者の 辭職願을 접수하거나 解任할 수 없다.

第135條(辭職) ①國會는 그 議決로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議員이 辭職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署名·捺印한 辭職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辭職의 許可與否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136條(退職) ①議員이 견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開始日 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행사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②議員이 法律에 規定된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에는 退職된다.

③議員에 대하여 第2項의 被選舉

權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刑을 宣告한 法院은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137條(闕員通知)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이내에 大統領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138條(資格審査의 請求)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30人이상의 連署로 資格審査를 議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第139條(請求書의 委員會回附와 答辯書의 제출) ①議長은 第138條의 請求書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副本을 被審議員에게 송달하여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한다.

②被審議員이 天災·地變 또는 疾病 기타 事故에 의하여 期日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議長은 다시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140條(答辯書의 委員會審査) ①議長이 答辯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

②倫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에 의하여 審査한다.

③期日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倫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만으로 審査를 할 수 있다.

第141條(當事者의 審問과 發言) ①倫理特別委員會는 필요한 때에는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②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이 경우 被審議員은 다

른 議員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第142條(議決) ①倫理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제출한 때에는 議長은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被審議員은 本會議에서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 있다.

③本會議는 被審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로 決定되 그 資格이 없는 것을 議決함에는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3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書面으로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에게 송부한다.

第143條(議長의 警護權) 會期中 國會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議長은 國會안에서 警護權을 행한다.

第144條(警衛와 警察官) ①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國會에 警衛를 둔다.

②議長은 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政府에 대하여 필요한 警察官의 派遣을 요구할 수 있다.

③警衛와 派遣된 警察官은 議長의 指揮를 받아 警衛는 會議場建物안에서, 警察官은 會議場建物밖에서 警護한다.

第145條(會議의 秩序維持) ①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國會規則에 違背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亂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함을

금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을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146條(侮辱등 發言의 금지)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다른 사람을 侮辱하거나 다른 사람의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할 수 없다.

第147條(發言妨害등의 금지) 議員은 暴力을 행사하거나 會議중 함부로 發言 또는 騷亂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다.

第148條(喫煙등의 금지) ①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 飲食이나 喫煙을 할 수 없으며, 議案과 관련없는 新聞·雜誌 기타 刊行物등을 閱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 携帶電話機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本會議의 會議場안에서 個人携帶컴퓨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9條(中繼放送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안(本會議場은 傍聽席에 한한다)에서의 錄音·錄畫·촬영 및 中繼放送을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錄音등을 하는 者는 會議場의 秩序를 亂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國會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事進行을 音聲 또는 影像으로 完전한 상태를 放送할 수 있도록

그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會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설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放送을 위하여 필요한 制度를 國會規則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은 政治的 目的이나 商業的 目的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⑤國會運營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에 대한 基本原則의 수립 및 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며, 이를 위하여 放送審議小委員會를 둔다.

第150條(現行犯人の 逮捕) 國會안에 現行犯人이 있을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은 이를 逮捕한 후 議長의 指示를 받아야 한다. 다만, 議員은 會議場안에 있어서는 議長의 命令 없이 이를 逮捕할 수 없다.

第151條(會議場出入의 제한) 會議場안에는 議員·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 기타 議案審議에 필요한 者와 議長이 許可한 者 외에는 出入할 수 없다.

第152條(傍聽의 許可) ①議長은 傍聽券을 발행하여 傍聽을 許可한다.

②議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數를 제한할 수 있다.

第153條(傍聽의 금지와 身體檢査)

①凶器를 휴대한 者, 酒氣가 있는 者, 精神에 異常이 있는 者 기타 行動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者는 傍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②議長은 필요한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으로 하여금 傍聽人の 身體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154條(傍聽人에 대한 退場命令)

①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

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②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第155條(倫理審査 및 懲戒) ①倫理特別委員會는 議員이 國會議員倫理綱領 및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을 違反하는 行위를 한 때에는 이를 審査하여 그 議決로써 해당 議員에게 違反事實을 通告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때에는 그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1. 憲法 第46條第1項(清廉의 義務) 및 第3項(利權運動의 금지), 民法 第146條(侮辱等 發言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되는 行위를 한 때
2. 第54條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第2項에 위반하여 國會에서 職務上 發言한 때
3. 第102條(議題와 發言의 금지) 및 이 法에서 정한 發言時間의 制限規定에 위반하여 議事進行을 延宕한 때
4. 第11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掲載部分을 다른 사람에게 閱覽하게 하거나 이를 轉載 또는 複寫하게 한 때
5. 第1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公開會議 內容을 公表한 때
6. 彈劾訴迫事件의 調査를 함에 있어서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이 規定하는 調査上의 注意義務에 위반되는 行위를 한 때
7.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會議場의 秩序紊亂行爲를 하거나 이에 대한 議長 또는 委員長의 措置에 不應한 때

8. 正當한 이유없이 國會集會日로부터 7日이내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후 5日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를 2回 받았을 때

10.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

11. 公職者倫理法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

第156條(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와 회부) ①議長은 第15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倫理審査對象議員(이하 "倫理審査對象者"라 한다) 또는 懲戒對象議員(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②委員長은 所屬委員중에서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議長은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議員이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한 倫理審査 또는 懲戒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議員 20人이상의 贊成으로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倫理審査 또는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贊成議員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한다.

⑤第3項과 第4項의 倫理審査要求

또는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議長은 이를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本會議에 보고한다.

⑥倫理特別委員會의委員長 또는委員 5인이상이倫理審査對象者 또는懲戒對象者에 대한倫理審査 또는懲戒의 요구를 한 때에는倫理特別委員會는 이를議長에게 보고하고審査할 수 있다.

⑦第1項 내지第6項의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事由로 해당議員에 대한倫理審査와懲戒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第157條(倫理審査 및懲戒의 요구 또는회부의時限등) ①第156條第1項·第2項 및第5項의規定에 의한倫理審査回附 또는懲戒回附는議長이 그事由가 발생한 날, 그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委員長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倫理審査要求書나懲戒要求書를 제출받은 날부터閉會 또는休會期間을 제외한3日 이내에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第156條第2項의規定에 의한委員長의倫理審査對象者 또는懲戒對象者 보고와同條第3項·第4項 및第6項의規定에 의한倫理審査要求 또는懲戒要求는 그事由가 발생한 날, 그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5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閉會期間중에 그對象者가 있을 경우에는次回國會的集會日부터3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倫理特別委員會는第156條第1項 내지第5項의規定에 의한倫理審査回附가 있거나同條第6項의規定에 의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3月내에 그審査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그審査를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案件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第158條(倫理審査 및懲戒의議事) 倫理審査 및懲戒에 관한會議는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本會議 또는委員會의議決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9條(審問) 倫理特別委員會는倫理審査對象者 또는懲戒對象者와關係議員을 출석하게 하여審問할 수 있다.

第160條(辨明) 議員은 자기의倫理審査案 또는懲戒案에 관한本會議 또는委員會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辨明하거나 다른議員으로 하여금辨明하게 할 수 있다.

第161條(倫理特別委員會의審査에 대한特例) 倫理特別委員會는懲戒對象者의 행위가國會議員倫理綱領 및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의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懲戒를 하지 아니하고第15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第162條(倫理審査의 보고 및懲戒의議決) ①議長은倫理特別委員會로부터倫理審査에 대한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그審査結果를 지체없이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議長은倫理特別委員會로부터懲戒에 대한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本會議에附議하여 이를議決하여야 한다. 다만,議長은倫理特別委員會로부터懲戒를 하지 아니하기로議決(第161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면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63條(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①第1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國會議員手當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手當 및 立法活動費·特別活動費는 그 2分の 1을 감액한다.

4. 除名

②第1項第1號와 第2號의 경우에는 倫理特別委員會에서 그 文案을 작성하여 報告書와 함께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除名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는 다른 懲戒의 종류를 議決할 수 있다.

④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第164條(除名된 者의 立候補制限)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 除名된 者는 그로 인하여 闕員된 議員의 補闕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

第165條(期間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期間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166條(規則制定) 國會는 憲法 및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8호 국회]

第1條 (目的) 이 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③第2項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條 (調査) ①國會는 在籍議員 4分の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개정 2000.2.16>

②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連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

하고 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 확정한다.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의하여 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 및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 시행한다.

⑤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返戻한다.

⑥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戻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第4條 (調査委員會) ①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人和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を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 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3.7>

④ 調查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관련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條 (小委員會등) ① 監査 또는 調査를 행하는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이상의 委員으로 별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委員會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 (事務補助者) ① 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 事務補助者는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研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第7條 (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

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固有業務에 관하여는 地方議회가 구성되어 自治적으로 監査業務를 施行할 때까지에 한한다.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의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第7條의2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6〕

第8條 (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9條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① 本會議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 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査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 調査計劃書에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 調査委員會의 調査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第9條의2 (豫備調査) 委員會는 國

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 調査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 등으로 하여금 豫備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本조신설 2000.2.16〕

第10條 (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 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の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書類 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개정 2000.2.16〉

④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の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 (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12條 (公開原則) 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第13條 (除斥과 回避) ① 議員은 직접 利害關係가 있거나, 公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第14條 (注意義務) ① 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②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秘密을 正當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의2 (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格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調査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監査院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第16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の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17條 (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18條 (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생략>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9호 국회)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行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要求, 證言·鑑定등에 關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報告와 書類提出의 要求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の 要求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 (證言등의 거부) ①證人は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鑑定人は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第4條 (公務上 秘密에 關한 證言· 書類의 제출) ①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要求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要求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內容이 職務上 秘密에 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關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要求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要求할 수 있다.

③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第5條 (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要求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 要求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 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6條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

③第2項의 同行命令狀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

人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同行命令狀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同行命令狀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

⑦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狀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7條 (證人·鑑定人의 宣誓) ①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③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 (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 (證人の 보호) ①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は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は 그 資格을 證明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關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을 要求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錄音·錄畫·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錄取한 錄音테이프 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查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要求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第10條 (檢證) ①委員會는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檢證을 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 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02.3.7>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④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3.7>

第11條 (旅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第12條 (不出席 등의 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 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인은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0.2.16>

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13條 (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懲役に 처한다.

第14條 (偽證 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 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

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 (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連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개정 2000.2.16>

④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狀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查를 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 (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본조신설 2000.2.1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0.2.16>]

第17條 (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00.2.16>]

附 則 <생략>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5호 행정자치부)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國民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2.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姓名·住民登錄番號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結合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情報의 入力·貯藏·編輯·檢索·削除 및 出力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文章만을 작성하는 등의 單純業務處理를 위한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個人情報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身分을 識別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個人情報를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구성된 個人情報의 集合物로서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記錄된 것을 말한다.

5. "處理情報"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어 있는 個人情報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個人情報의 처리를 다른 機關·團體등에 委託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機關·團體등으로부터 委託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保有機關"이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는 機關을 말한다.

8. "情報主體"라 함은 處理情報에 의하여 識別되는 者로서 당해 情報의 主體가 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중 統計法에 의하여 蒐集되는 個人情報와 國家安全保障과 관련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 또는 제공요청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章 個人情報의 蒐集 및 처리

第4條 (個人情報의 蒐集) 公共機關

의 長은 思想·信條등 개인의 기본적 人權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蒐集對象 個人情報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 (個人情報화일의 보유범위) 公共機關은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第6條 (사전통보) ①公共機關의 長이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보하고, 기타 公共機關의 長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를 綜合하여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公共機關의 長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個人情報화일의 보유를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9>

1. 個人情報화일의 명칭
 2.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
 3. 保有機關의 명칭
 4.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는 개인 및 項目의 범위
 5. 個人情報의 蒐集方法과 處理情報를 동상적으로 제공하는 機關이 있는 경우에는 그 機關의 명칭
 6. 個人情報화일의 閱覽豫定時期
 7. 閱覽이 제한되는 處理情報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②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個人情報화일에 대하

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家의 安全 및 外交상의 秘密 기타 國家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2. 犯罪의 搜查,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 執行, 矯正處分, 保安處分과 出入國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3. 租稅犯處罰法에 의한 租稅犯則 調査 및 關稅法에 의한 關稅犯則 調査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4. 컴퓨터의 試驗運營을 위하여 사용되는 個人情報화일
5. 1年이내에 削除되는 處理情報를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6. 保有機關의 내부적 業務處理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個人情報화일
7.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數이내의 情報主體를 대상으로 하는 個人情報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個人情報화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情報화일

第7條 (個人情報화일의 公告)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年 1회이상 官報에 게재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機關의 該當한 業務遂行을 현저하게 阻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어 있는 項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9>

第8條 (個人情報화일臺帳의 작성)

保有機關의 長은 第6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個人情報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個人情報화일별로 第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臺帳(이하 "個人情報화일臺帳"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公告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個人情報화일臺帳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9條 (個人情報의 安全性確保등) ①

公共機關의 長은 個人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個人정보가 紛失·盜難·漏出·變造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安全性確保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의 長은 處理정보의 정확성 및 最新性を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정보의 처리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條 (處理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保有機關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有機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保有機關의 者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情報主

體 또는 第3者의 權利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情報主體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法律에서 정하는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處理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條約 기타 國際協定の 이행을 위하여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에 제공하는 경우

4. 統計作成 및 學術研究등의 目的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제공하는 경우

5. 情報主體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住所不明등으로 同意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情報主體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犯罪의 搜查와 公訴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法院의 裁判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第2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정보를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處理정보를 受領한 者에 대하여 使用目的·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處理정보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保有機關의 長은 情報主體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處理情報의 이용을 당해 機關내의 特定部署로 제한할 수 있다.

⑤保有機關으로부터 제공받은 處理정보를 이용하는 機關은 提供機關의 同意없이 당해 處理정보를 다른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 (個人情報取扱者の 義務)
個人情報의 처리를 행하는 公共機關의 職員이나 職員이었던 者 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業務를 委託받아 그 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職務상 알게 된 個人정보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處理정보의 閱覽·訂正 등

第12條 (處理정보의 閱覽) ①情報主體는 個人정보화일臺帳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書面으로 本人에 관한 處理정보의 閱覽(文書에 의한 寫本의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有機關의 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정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日이내에 閱覽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閱覽을

延期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消滅한 때에는 지체없이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第13條 (處理정보의 閱覽制限) 保有機關의 長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을 請求한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정보를 閱覽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處理정보의 閱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業務로서 당해 業務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租稅의 賦課·徵收 또는 還給에 관한 業務

나. 教育法에 의한 각종 學校에서의 成績의 評價 또는 入學者의 選拔에 관한 業務

다. 學力·技能 및 採用에 관한 試驗, 資格의 審査, 補償金·給付金の 算定 등 評價 또는 판단에 관한 業務

라. 다른 法律에 의한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業務

마. 삭제<1999.1.29>

바. 기타 各目 내지 各目에 준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2. 개인의 生命·身體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財産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1999.1.29>

第14條 (處理정보의 訂正)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人의 處理정보를 閱覽한 情報主體는 保有機關(다른 機關으로부터 處理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機關을 제외하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長에게 書面으로 당해 處理情報의 訂正을 請求할 수 있다.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를 받은 때에는 處理情報의 내용의 訂正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節次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調査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請求人으로 하여금 訂正請求事項의 확인에 필요한 證憑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 (不服請求)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公共機關의 長이 행한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者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외의 公共機關의 長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中央 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

第16條 (代理請求) 情報主體는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第4章 補則

第17條 (手數料等)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請求 또는 訂正請求를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와 郵送料(處理情報 寫本の 郵送을 請求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18條 (資料提出의 요구등)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의 長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처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實態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第19條 (의견제시 및 권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의 長에게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第20條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 ①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정책 및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2. 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公共機關간의 意見調整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③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政府投資機關등의 指導·監督) 관계中央 行政機關의 長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

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의 公共機關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指導·點檢등을 할 수 있다.

第22條 (公共機關의의 개인 또는 團體의 個人情報保護) 公共機關의의 개인 또는 團體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個人情報를 처리함에 있어 公共機關의 예에 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의의 개인 또는 團體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第5章 罰則

第23條 (罰則) ①公共機關의 個人情報處理業務를 방해할 目的으로 公共機關에서 처리하고 있는 個人情報를 변경 또는 抹消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1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으로 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公共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閱覽 또는 제공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이 法에 의한 個人情報의 保有機關 및 個人情報를 委託받아 처리하는 機關의 從事者중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생략>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법무부]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등<改正 1991·5·31>)

①이 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新設 1991·5·31>

第2條 (定義<改正 1991·5·31>)

①이 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외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중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중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년 이상의 有

期懲役に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第4條 (目的遂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1991·5·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第99條·第250條第2項·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重大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나. 가목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3. 刑法 第115條·第119條第1項·

第147條·第148條·第164條 내지 第169條·第177條 내지 第180條·第192條 내지 第195條·第207條·第208條·第210條·第250條第1項·第252條·第253條·第333條 내지 第337條·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誘리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을 移動·除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을 損壞·隱匿·偽造·變造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煽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第5條 (自進支援·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收受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⑤削除(1991·5·31)

第6條 (潛入, 脫出)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した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의 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した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③削除(1991·5·31)

④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⑥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

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譏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畫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各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第8條 (會合·通信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方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③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④削除(1991·5·31)

第9條 (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銃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改正 1991·5·31>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會合·通信·連絡을 위한 場所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편의를 제공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改正 19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⑤削除(1991·5·31)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全文改正 1991·5·31]

第11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

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誣告, 捏造) ①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偽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湮滅·隱匿한 者는 그 各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②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이를 指揮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다만, 그 法定刑의 最低가 2年未滿일 때에는 이를 2年으로 한다.

第13條 (特殊加重) 이 法, 軍刑法 第13條·第15條 또는 刑法 第2編 第1章 內亂의 罪·第2章 外患의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2項 내지 第5項, 第4條第1項第1號중 刑法 第94條第2項·第97條 및 第99條, 同項第5號 및 第6號, 第2項 내지 第4項, 第5條,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 第7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法定刑의 最高를 死刑으로 한다.

第14條 (資格停止의 併科) 이 法의 罪에 관하여 有期懲役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改正 1991·5·31>

第15條 (沒收·追徵) ①이 法의 罪를 犯하고 그 報酬를 받은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②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押收物의 פק기 또는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第16條 (刑의 減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이 法의 罪를 犯한 후 自首한 때
2.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이 法의 罪를 犯한 他人을 告發하거나 他人이 이 法의 罪를 犯하는 것 을 방해한 때
3. 削除<1991·5·31>

第17條 (他法適用의 排除)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3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7·12·13>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18條 (參考人의 拘引·留置)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參考人으로서 출석할 要求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2회이상 出席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管轄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하여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近接한 警察署 기타 적當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다.

第19條 (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 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

에 搜查를 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地方法院判事は 第1項의 罪로서 檢事の 請求에 의하여 搜查를 계속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 이내로 한다.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 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 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 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第20條 (公訴保留) ①檢事は 이 法の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참작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公訴의 提起없이 2年을 경과한 때에는 訴追할 수 없다.

③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정한 監視·保導에 관한 規則에 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④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犯罪事實로 再拘束할 수 있다.

第4章 報償과 援護

第21條 (賞金) ①이 法の 罪를 犯한 者를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の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증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の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2條 (報勞金) ①第21條의 경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押收物 價額의 2分の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價額의 2分の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報勞金の 請求 및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報償) 이 法の 罪를 범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傷痕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改正 1997·1·13>

[全文改正 1991·5·31]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の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1·5·31>

②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의 출석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軍法 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이 法의 規定중 判事는 軍事法院軍判事로, 檢事는 軍檢察部檢察官으로, 司法警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 본다.<改正 1987·12·4, 1994·1·5>

附 則 <생략>

〈부록〉

- 34.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71
- 35. 북한 당규약(조선로동당 규약) 2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

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시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빨려불기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

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 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

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블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경제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벽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

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

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릉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차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동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

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부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 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 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의 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평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전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

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향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

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 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호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 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재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

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정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

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 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

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

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중

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중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로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1980.10.13 제6차 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들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 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 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비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 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 준비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품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적 균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과 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

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면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

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어떠한 지시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후보당원의 임무는 당원의 임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

와 같다.

7)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 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 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율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기관원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 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세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로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 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무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

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 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 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수와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당위원회 보조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 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 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친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

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

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의 대표자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회의의 소집일과 의정을 2개월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 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는 인사 행정 및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 마다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

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회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 선거
 - 3) 도(직할시)당대표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수행한다.
-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

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축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대열을 확대시키며 당원 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중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사험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동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

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 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당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40. 시(구역)·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중과행위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립접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립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생활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

할 수 있다.

- 5)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총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회)이다.

-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솔하 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총조직은 1년임기의 해당조직을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 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

에 2회이상 소집한다.

-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총조직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2) 하급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

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 4) 당원 적임자를 발견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 훈련시킨다.

-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무리에 결속시킨다.

-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

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붉은기척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거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에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

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당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

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
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
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
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
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
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
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
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
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
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
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
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로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
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
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
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
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
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

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
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
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
수입의 2%로 한다.

남북관계 주요법령집

2002年 6月 日 印刷

2002年 6月 日 發行

發行 統 一 部

編輯 行政法務擔當官室

印刷 進明印刷公社

